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뉴스레터

KOSCA LETTER

2024 Vol.39

KOSCA MESSAGE | KOSCA NEWS | KOSCA INFO | KOSCA TODAY | KOSCA TOGETHER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뉴스레터

KOSCA LETTER

2024 Vol.39

발행인 회장 김세원
기고/투고 kosca21@kosca.or.kr
편집/발행처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디자인/제작 거북인쇄공사 (051. 808. 5571)
사진제공 거북인쇄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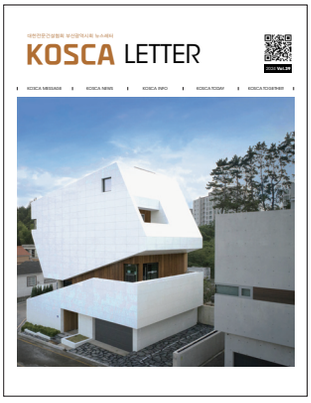

표지이야기
Oblique House
「2023 부산다운 건축상」 장려상 수상작

설계자 (주)대홍종합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정태석, 민종갑
사진저작권 건축사진가 한상교

KOSCA MESSAGE

04 신년사
1.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회장 **김세원**
2.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 **윤학수**
3.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4. 부산광역시의장 **안성민**
5. 부산광역시교육감 **하윤수**

KOSCA NEWS

09 협회소식
– 제회의 및 행사
– 회원사 수주지원 및 업역 확대를 위한 간담회 활동
– 회장동정
– 사회공헌활동
21 건설공사 수주지원 및 제도개선사업
22 특허 및 신기술 소개
– 2023년도 4/4분기 신기술 현황

12

20

KOSCA **INFO**

24 **전문건설인의 삶**
- 제75호 : 동우건설(주) 대표이사 **이기태**
- 제76호 : 구구건설(주) 대표이사 **정중화**

28 **건설산업정보(법령개정) PART1**

34 **건설산업정보(회원사안내) PART2**

47 **건설 관련 유권해석 및 판례**

50 **특별기고〈세무칼럼〉**
- 코타 조세연구소 대표 이수용 세무사

52 **그것이 알고 싶다**
- 건설관련 법 상담

KOSCA **TODAY**

53 **회원사 현황**
- 부산전문건설업체 등록현황
- 전입, 전출업체 회원사 명단
- 회원사 변동사항(상호, 대표자변경)
- 부산시회 신규회원 현황

57 **협회·조합 소식**
- KOSCA 중앙회 업무단신
- 우리시회 2024. 1/4분기 주요일정
- 전문건설공제조합 소식

58 **건설업 중대재해 사례와 대책**
- 동절기 건설현장 핵심안전수칙

60 **2024년 건설업 교육**
- 교육일정 안내

KOSCA **TOGETHER**

61 **부산의 명소**
- 부산의 라라랜드 우암 도시숲

62 **세계의 아름다운 건축물**
- 디즈니가 사랑한 노이슈반타인성

63 **소통하는 문화공간**
- 힐링 무비
- 힐링 북

65 **오늘의 트렌드**
- 분초사회

66 **글로벌 이슈**
- 2025년 세계환경의 날

67 **슬기로운 생활 꿀팁**
- 동백패스(대중교통 통합할인제)

68 **하루 5분 건강**
- 운동 / 건강습관 /건강음식

70 **독자와 함께**
- 회원사 참여 마당(독자의견 및 퀴즈)

올 한 해에도 원하시는 모든 일 이루시고 희망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김 세 원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회장

존경하는 전문건설인 여러분!
2024년 갑진년(甲辰年)의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예로부터 청룡(靑龍)은 큰 희망과 성취의 상징으로 여겨진 만큼, 올 한 해에도 원하시는 모든 일 이루시고 희망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대다수의 경제 전문가들은 2022년 시작된 인플레이션이 2024년에도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며,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과 높은 금리로 인해 건축허가, 착공 및 분양물량 급감 등 공공 · 민간 분야 할 것 없이 건설경기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물가-저성장에 따른 한국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 진입이 예상되고 있어 건설산업 역시 유래 없는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전문건설인들은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나라 경제를 견인해 온 주역으로서 지금까지의 어떠한 위기도 슬기롭게 이겨내 왔습니다.

전문건설인 여러분!
2024년 부산시회는 전문건설업계가 당면한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회원사의 일감확보와 권익증진을 위한 불합리한 제도개선, 급변하는 건설환경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다양한 교육사업 등 제반사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특히 건설산업 생산구조 정상화 및 공정한 경쟁 환경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에 중앙회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산지역 현안사업인 북항재개발사업 및 가덕신공항 건설사업 등 대형건설공사에 회원사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다할 것이며, 발주기관과의 유대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여 중 · 소형 업체의 먹거리인 생활형 SOC사업 확대를 위해서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갑진년, 회원사들과 함께라면 수많은 난제들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며, 그동안 다져온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발짝 더 성장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근고지영(根固枝榮 : 뿌리가 튼튼해야 가지가 무성하다)의 값진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고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올해도 협회는 더욱 알찬 사업과 서비스로 여러분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윤 학 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

사랑하는 전문건설 가족 여러분!
2024년의 새로운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갑진년(甲辰年), 푸른 용의 기운을 받아 뜻하시는 소망을 모두 이루시고, 전문건설업계도 다시 힘차게 날아오르는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협회는 더욱 알찬 사업과 서비스로 여러분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지난해 우리는 건설업 상호시장 개방, 부동산 PF대출 위험성 등 쉽지 않은 국내 환경과 금리 · 유가의 고공행진, 건설자재 가격 폭등 여파 등 국제 정세가 맞물려 최근 4분기 연속 건설수주가 감소하는 불안정한 시간을 견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후죽순처럼 번져 있던 현장 노조의 불법행위 문제를 크게 개선하였고, 과도한 하자책임 부담을 전향적으로 줄이는 입법에서도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또한, 전문건설 원도급 보호제도를 4억3천만원으로 확대 · 연장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을 통과시키면서 제가 약속드렸던 '극적 반전의 2023년'을 만들어 냈습니다.

2024년에도 협회는 전문건설인의 자신감과 열정으로 여러 현안을 해결해 나가면서 K-건설의 진정한 주인공으로서 건설산업의 밝은 미래를 위한 길을 주도적으로 개척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무엇보다 '전문공사는 전문업체가, 종합공사는 종합업체가'시공한다는 기본원칙을 확실히 세우면서 부대공사, 업종별 업무내용의 조정을 통해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전문업역의 확장판을 만듦으로써 직접시공 확대 이슈와 생산체계 개편의 거대한 파도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을 중심으로 한 안전관련 규제 합리화, 하도급 부당특약의 효력 무효화, 내 · 외국인력 수급 및 활용성 제고 등 중요한 제도 개선을 통해 전문건설 영위 환경을 업그레이드하고 낙찰률 상향, 공휴일수당과 장애인부담금 등 순공사비를 확보하는 분야에서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예로부터 청룡(靑龍)은 좋은 운과 생명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에는 전문건설업계가 더 높이, 더 멀리 비상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과 현장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가 늘 여러분의 곁에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을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새로운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박 형 준
부산광역시장

전문건설 분야에서 많은 업적을 이룬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시회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새해에도 여러분의 성공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전문건설인 여러분은 부산의 도시 발전과 건설 분야의 중요한 주역으로서,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으로 부산은 더욱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는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와 분쟁지역 확대 등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등으로 건설업계에 많은 어려움과 도전이 있었습니다. 건설업은 지역경제를 움직이는 기반이고, 시민 일자리와도 직결되는 분야로 업계의 경영난은 곧 경제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올해에도 건설 경기는 녹록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단축, 공공주택사업 참여 민간 사업자의 물가 변동에 따른 사업비 조정 등 주택건설시장의 제도개선을 이루어 냈으며, 원도심 등 노후 불량주거지 정비사업 활성화 일환으로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 시 동별 동의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법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부산시 자체적으로도 주택 및 건축사업은 위원회 수시 개최 등을 통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2024년 자체 사업예산 외에도 사상 최대 규모의 국비 9조 2,30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가덕도신공항 조속 건설 5천363억 원,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건립 97억 원, 부산신항~김해 간 고속도로 건설 1천553억 원,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 414억 원, 지방광역상수도 건설 30억 원, 내부 순환(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건설 415억 원,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건설 188억 원, 도시철도 오륙도선 건설 30억 원, 황령3터널 도로개설 28억 원이 국비에 포함되어 부산의 대규모 인프라 건설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전문건설인 여러분!
2024년을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새로운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정부와 함께 이를 뒷받침할 법률안(특별법)을 마련해 부산 도약의 가시적 변화를 이루겠습니다. 부산은 이미 글로벌 허브도시로서 충분한 가능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살기 좋은 도시' 아시아 6위, '스마트도시' 세계 15위 · 아시아 3위, '인기 급부상 여행지' 글로벌 톱2 등 도시브랜드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도시브랜드 상승은 역대 최대 투자유치로 이어져 지난 한 해, 삼성중공업을 비롯 대기업 3개사를 포함해 4조원을 유치했습니다. 올 해는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해 6조원을 넘게 될 것입니다. 새해에는 함께 더 나은 건설분야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 봅시다. 여러분의 지혜와 열정으로 건설분야 발전과 성장을 이루어내는 데 성공합시다. 부산시는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새해에는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역 건설업 활성화를 위해 힘껏 뒷받침하고 ‘글로벌 허브 부산’ 을 향해 더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안 성 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전문건설인 여러분!
갑진년 새해, 비상하는 청룡처럼 뜻한 일 모두 이루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희망찬 새해가 밝았지만 지역 경제를 이끌어온 건설업계의 어려움은 여전합니다. 금리 인상과 원자재 가격 상승이 압박해온 비용 부담이 줄지 않고 있고 얼어붙은 건설 경기도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 뜨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두운 법이고 낙관주의자는 위기 속에 기회를 보고, 비관주의자는 기회 속에서 위기를 본다는 말도 있습니다. 위기 뒤에 반드시 찾아오는 기회를 잊지 말자는 희망의 메시지를 여러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지난해 부산은 2030세계박람회 유치 과정을 통해 많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세계가 부산의 역량과 잠재력에 주목하면서 국제적 위상이 크게 높아졌고 수도권 일극체제로 멈춰선 대한민국이 다시 뛰기 위해 부산이라는 동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각인시켰습니다.

2024년에도 부산은 대도약의 행진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국토 남부권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견인하는 글로벌 허브도시를 향해 더 힘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 북항재개발, 한국산업은행 본사 이전을 발판으로 물류 · 금융 · 스마트 신산업이 이끄는 역동의 미래를 앞당기고 대한민국의 해양 · 경제수도로 당당히 나설 것입니다. 이 모든 출발점은 민생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는 ‘부산’이라는 이름이 시민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힘껏 뒷받침하겠습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와 각 회원사 여러분도 함께 성원해 주십시오.

갑진년 한 해,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의 번창과 모든 회원사의 도약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래 건설사업을 선도하는 구심점으로 도약하길 기대합니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

희망찬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회원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뜻깊은 새해를 맞이하여『코스카레터』제39호가 발간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전문건설업의 육성과 부산경제 활성화에 힘써오신 김세원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에서는 급변하는 건설 환경 속에서도 2,400여 회원사의 권익 신장과 대한민국 건설산업의 발전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의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을 비롯하여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나눔에 앞장서는 등 선한 영향력을 전해주심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14년 6월부터 발간된 부산의 전문건설 소식지인『코스카레터』는 유익한 현장 소식과 회원사 정보는 물론, 건설 문화의 저변을 확대하는 마중물의 역할을 담당하여 관련 역량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부산교육청에서도 "공간이 교육을 만든다."라는 철학 아래, 교육공동체가 함께 참여하여 안전하고 쾌적하면서도 미래 인재 양성에 적합한 학교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미래지향적인 학교 공간 혁신으로 미래형 교육과정의 구현과 아이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갑진년(甲辰年) 청룡의 해에도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소통하고 화합하여 미래 건설사업을 선도해 나가는 구심점으로 도약하길 기대합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회의 및 행사

01

2023년 제2차 부산전문건설인 단합산행

부산시회(회장 김세원)는 10월 6일(09:00 / 월아산) 협회발전과 대표회원간의 친목도모를 위해 대표회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제2차 부산전문건설인 단합산행」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산행은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과 문산읍, 진성면에 걸쳐 있는 월아산으로 회원사들은 질매재에서 부터 월아산 정산까지 오르며 서로를 격려하고 우의를 다지는 등 협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02

부산전문건설인 제3회 쌓아올림 콘서트

부산시회(회장 김세원)는 10월 17일(18:30 / KBS부산홀) 부산광역시 관계자 등 내외 귀빈과 부산의 2,300여 전문건설 회원사 임·직원 및 가족 등 총 2,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전문건설인 제3회 쌓아올림 콘서트」를 개최했다.

부산시회 김세원 회장은 "11월 결정되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유치를 기원하고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건설현장 최일선에서 땀흘린 부산전문건설인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우리나라 최고의 가수들을 초청하여 이번 음악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음악회에는 국민가수 '조항조'와 '박강성', '신승태', '펜텀싱어 루치올라', '부산아시아콘서트 오케스트라'가 출연하여 감동의 무대를 선사하였으며, 건설현장 최일선에서 국가와 가족을 위해 피땀흘리며 노력하시는 이 시대의 아버지를 영상과 음악을 통해 표현함으로서 참석자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제3회 부산전문건설인
쌍아올림 콘서트

KOSCA

KOSCA

제3회 부산전문건설인
쌍아올림 콘서트

제3회 쌓아올림 콘서트 후원 명단

구분	후원자명단	후원금액	비고
부산시회 회장단 및 감사	• 회장 김세원(1,000만원) – (주)세원이엔지 • 수석부회장 김형겸(330만원) – 지산특수토건(주) • 부회장 심수율(300만원) – 건진개발(주) • 부회장 윤영갑(330만원) – (주)보광 • 부회장 송유경(300만원) – 경남종합조경 • 회원감사 김문곤(100만원) – 신우개발 • 회원감사 이주상(100만원) – 거북건설(주)	24,600,000원	
협회 시·도회 및 업종별협의회	• 중앙회 윤학수 회장 • 서울시회 노석순 회장 • 울산시회 조현철 회장 • 강구조물공사업협의회 김희선 회장 • 대구시회 김석 회장, 인천시회 지문철 회장 • 광주시회 박병철 회장, 대전시회 김양수 회장 • 강원도회 박용석 회장, 세종·충남도회 박종회 회장 • 전북도회 임근홍 회장, 전남도회 고성수 회장 • 토공사업협의회 이재균 회장 •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협의회 정지호 회장 • 철근·콘크리트공사업협의회 장세현 회장	30,000,000원	
부산시회 유관기관	• 부산상공회의소 장인화 회장(300만원)	3,000,000원	
부산시회 임원 및 회원사	• 삼지건설(주) 대표이사 이태원(110만원) • (주)연동 대표이사 반백철(100만원) • 민성건설(주) 대표이사 서영철(50만원) • 동경개발건설(주) 대표이사 김미옥(20만원)	2,800,000원	
합 계		60,400,000원	

03

2023회계연도 신규회원 간담회 개최

부산시회(회장 김세원)는 11월 2일(11:00 / 이리스웨딩홀&뷔페) 2022년 및 2023년에 협회 회원으로 가입한 신규회원사 대표 및 임·직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회계연도 신규회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세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신규회원으로 가입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협회의 각종 행사에도 함께 참여하여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면서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건설공사 상호시장 개방 등 어려운 전문건설업계의 상황을 협회와 함께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자"고 격려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신규회원들을 위해 협회의 역할과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책무와 신고사항 등이 포함된 "전문건설업 신규회원 업무편람" 책자를 배부하고, 한종석 사무처장이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했다. 또한, 회원사와의 대화시간을 통해 건설업을 유지하면서 겪게 되는 애로사항과 문제점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04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및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분과회의

부산시회(회장 김세원)는 11월 2일(13:00 / 서면 소재 이리스웨딩홀&뷔페) 보링 · 그라우팅공사업 및 상 · 하수도설비공사업 회원사 대표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회계연도 보링 · 그라우팅공사업 및 상 · 하수도설비공사업 분과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부산시회 김세원 회장은 "전문 · 종합의 상호시장 진출과 관련하여 5억원 미만 전문공사는 종합건설사업자가 영구히 참여할 수 없도록 제도개선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하며, "분과별 현안사항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협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 대응 추진과 건설공사 입찰참가자격 개선, 2억원 이상 전문공사 전문건설업 단독발주 추진 등 회원사 건설공사 수주지원 추진현황 및 우리시회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고 보링 · 그라우팅공사업과 상 · 하수도설비공사업의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05

2023회계연도 제3차 운영위원회의 및 제2차 임원연석회의

부산시회(회장 김세원)는 11월 21일(11:00 / 월강초밥) '2023회계연도 제3차 운영위원회의 및 제2차 임원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운영위원회의에서는 운영위원 및 감사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회 제39회 정기총회 포상대상자 추천(추인)의 건 및 부산광역시 2023년 자랑스러운 건설인상 포상대상자 추천(추인)의 건을 의결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안건 심의를 마친 후 개최된 제2차 임원연석회의에서는 임원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현황 및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 대응 추진, 협회 주요일정 계획(안)등을 보고하고,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협의했다.

06

건설분야 전문가 법률상담 등 무료자문

부산시회(회장 김세원)는 11월 27일(14:00 / 부산전문건설회관 4층 회의실) 회원사의 고충해결과 당면한 애로사항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도움을 주기 위해 「건설분야 전문가 법률상담 등 무료자문」을 실시했으며, 회원사 임·직원 20여명이 참여해 법률·노무분야에 대해 도움을 받았다.

이 날 상담에서는 부산시회 이윤근 자문변호사가 발주자 및 원도급사와의 분쟁에 대한 법적 대처방안 등에 대해 상담했으며, 여찬모 자문노무사는 임금명세서 작성방법 및 교부,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관리, 4대 사회보험 및 퇴직금 분쟁 등 노무분야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상담이 이루어 졌다.

07

2023회계연도 모니터 회의

부산시회(회장 김세원)는 12월 14일 (11:30/해운대 더파티 팔레드시즈 스카이룸) 회장단 및 모니터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 회계연도 모니터 회의」를 개최했다.

부산시회 김세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협회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설문조사는 회원사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 발굴과 제도개선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회원사가 겪고 있는 애로사항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모니터 활동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날 회의에서는 모니터 활동에 대한 추진경과 보고와 모니터와의 대화를 통해 전문건설업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고, 그 동안 설문조사 등 모니터 활동에 적극 참여한 우수 모니터에 대한 포상도 실시했다.

08

2023년도 건설(전문)공사 실적신고 및 회계실무 강습회

부산시회(회장 김세원)는 12월 21일, 22일 양일간 부산상공회의소 1층 대강당(부산진구 범천동 소재)에서 회원사 임 · 직원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건설(전문)공사 실적신고 및 회계실무 강습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습회에서는 실적신고서 작성방법 및 주의사항, 인터넷 실적신고 시스템 사용방법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며, 연말결산 자본금 계산 등 회계실무에 대한 교육도 함께 이루어 졌다.

한편 이날 참석하지 못한 회원사를 위해 강의 동영상 및 교육교재를 인터넷 홈페이지(www.kosca21.or.kr) ⇒ 회원전용공간 ⇒ 교육교재에 게재하여 회원사에서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회원사 수주지원 및 업역 확대를 위한 간담회 활동

01

부산전문건설업체-건설대기업 상생데이 개최

부산시회(회장 김세원)는 부산광역시와 공동으로 10월 23일과 10월 24일 양일간 부산광역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부산광역시 김광회 도시균형발전실장 등 건설관계관, 건설대기업 12개사, Scale-Up 참여 부산전문건설사업자 60여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2023년 부산전문건설업체-건설대기업 상생데이」를 개최했다.

이날 부산시회 김세원 회장은 "오늘 이자리를 통해 보다 많은 부산전문건설사업자들이 건설대기업의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부산지역에서 시행되는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등 대형건설공사의 하도급공사에 70%이상 참여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부산전문건설사업자와 중앙1군 건설대기업이 상생 협력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부산광역시, 12개 건설대기업 및 우리시회를 비롯한 5개 건설관련 협회가 참여하여 부산 경제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건설대기업과 부산전문건설사업자들이 1:1 상담을 통해 상호간에 구체적인 협력방안 등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

02

2023년 하반기 하도급 홍보 세일즈단 건설대기업 본사 방문

부산시회(회장 김세원)는 11월 9일부터 10일까지,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차례에 걸쳐 부산광역시 하도급관리팀과 합동으로 수도권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주)KCC건설, 동부건설(주), (주)태영건설, 동부건설(주), 쌍용건설(주), 신세계건설(주)를 차례로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다.

2차례에 걸쳐 개최된 간담회에서 부산시회와 부산시 하도급관리팀은 부산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부산 전문건설업체의 협력업체 등록 및 입찰참여 기회 확대를 협조 요청했으며, 안전사고 예방과 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건설대기업은 협회와 부산시가 타 시·도와 달리 지속적으로 본사까지 방문해 부산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에 적극 노력하는 만큼, 우수한 부산 전문건설업체를 발굴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03

2023년 하반기 부산지역 대형건설현장 방문 조사

부산시회(회장 김세원)는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에 걸쳐 부산광역시와 합동으로 「부산엘코델타시티 공동13블럭 공동주택 신축 공사현장」등 부산지역 내 6개 대형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건설부조리 및 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확인 및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현장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대금지급 적정여부 등 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를 확인하고,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및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지역업체 하도급 및 지역자재·장비 참여현황도 점검하여 부산 전문건설업체가 70%이상 하도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종별 우수 전문건설업체 명단이 필요할 경우 협회를 적극 이용토록 안내했다.

04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참석

부산시회(회장 김세원)는 12월 4일 「2023년 부산광역시 지역건설발전위원회」에 참석하여 부산지역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토론과 함께 현안 문제점 해결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회의는 부산광역시 김광회 도시균형발전실장을 비롯한 건설관계관, 건설관련 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부산시회는 지역 건설산업 발전 안건으로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사 부산전문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방안 마련」을 건의했다.

건의내용을 살펴보면, 민간건축 경기의 침체와 공공공사(SOC사업 등)의 발주물량 감소 등으로 인해 건설공사 수주난이 심화되면서 부산전문건설 업체들은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8조원을 육박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사는 부산에서 시행되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2,300여 부산전문건설업체들은 보다 많은 하도급 참여를 희망하고 있으나, 부산에서 시행되는 대형 국책공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을 주로 하는 부산의 전문건설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적 보호 장치가 없기에,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10조(지역기업의 우대) 제2항의 법률을 근거로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사에 지역전문건설업체 하도급 참여가 50% 이상 될 수 있는 우대기준을 제정해 달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에서는 부산시회의 건의내용을 긍정적으로 수용해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고시사업에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추가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 등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회장동정

01

부산·울산 중앙회 대의원 윤학수 회장님과의 간담회

부산시회(회장 김세원)와 울산시회(회장 조현철)는 11월 24일(11:00 / 해운대 몽 일식당)에서 부산·울산 중앙회 대의원 대의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회 중앙회 윤학수 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전문건설업계의 현안사항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간담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건설산업 정책과제 발굴,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의 조속한 정상화 추진경과 설명, 2024년 중앙회의 주요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방향 및 주요 현안사항 논의를 위한 자리로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으며, 중앙회 윤학수 회장은 "부산·울산 중앙회 대의원의 건의사항에 대해 법률 개선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사회공헌활동

01

부산광역시교육청 취약계층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성금 전달

부산시회(회장 김세원)는 11월 28일 부산광역시교육청을 방문해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에게 취약계층 학생들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성금 1,500만원을 직접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된 성금은 부산광역시교육청과의 교육결연 활동의 일환으로 학습환경과 생활환경이 어려운 학생을 돕기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되어지며,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보다 폭넓은 학습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회는 그동안 지역 교육환경 개선과 생활환경이 어려운 학생을 돕기 위한 교육메세나 활동을 2011년부터 꾸준히 전개하며, 협회의 사회적 책임과 나눔 문화 확산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02

2023년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

부산시회(회장 김세원)는 11월 28일(14:00 / 매축지마을) 회원사 대표 및 임·직원, 사무처 직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 '매축지 마을'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재가 장애인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연탄 20,000장(1,700만원)」의 성금을 전달하고, 구입한 연탄 중 일부를 직접 전달하는 「2023년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가졌다.

이날, 부산시회 김세원 회장은 "연탄나눔 봉사활동에 참여해 주신 회원사 대표 및 임·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 지역의 소외 계층과 어려운 이웃에게 부산전문건설인의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어 조금이나마 훈훈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나눔과 봉사를 통해 협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사회의 동반자로서 공동번영의 가치를 함께 실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03

부산진구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연탄나눔 지원금 전달

부산시회(회장 김세원)는 12월 10일 부산진구 신선마을(부암1동 소재)을 방문하여 「사랑의 연탄나눔」 지원금 300만원을 (사)국제장애인문화교류부산진구협회 초록봉사단(단장 이재형)을 통해 전달했다.

부산시회는 이 자리에서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소외계층을 돕는 손길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협회는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건설경제단체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항상 나눔과 봉사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부산시회는 매년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계층 및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지원사업을 꾸준히 펼치고 있으며, 올 연말에도 동구 매축지 마을에 '사랑의 연탄나눔 지원금'전달을 시작으로 부산시교육청에'저소득층 학생 지원', '동래구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복지시설 3곳 지원 전달' 등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고 있다.

04

부산광역시 장애인 이용시설 3곳 지원금 전달

부산시회(회장 김세원)는 12월 14일 동래구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하여 동래구장애인복지관(관장 김성용), 동래종합사회복지관(관장 하소연), 백양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혜정) 이상 3곳의 기관에 총 지원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부산시회 김세원 회장은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해 소외계층을 돕는 손길이 많이 줄었지만, 협회는 지역 경제를 이끌어 가는 건설경제단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항상 나눔과 봉사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부산시회는 매년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지원사업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으며, 올 연말에도 부산광역시교육청에 '저소득층 학생 지원', 동구 매축지 마을에 '사랑의 연탄나눔 지원금 전달'등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고 있다.

05

부산광역시 동구청 “희망드림 모금” 지원금 전달

부산시회(회장 김세원)는 12월 27일 부산광역시 동구청(청장 김진홍)을 방문하여 동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희망드림 모금”사업에 지원금 500만원을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정 기탁했다.

“희망드림 모금”사업은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로 도움이 필요한 지역의 저소득 취약계층을 돕는 사업으로, 부산시회 김세원 회장은 이 자리에서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해 소외계층을 돕는 손길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건설경제단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항상 나눔과 봉사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회는 매년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계층 및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지원사업을 꾸준히 펼치고 있으며, 올 연말에도 부산시교육청에 ‘저소득층 학생 지원’을 시작으로 ‘동래구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복지시설 3곳 지원금 전달’, 동구 매축지 마을에 ‘사랑의 연탄나눔 지원금’전달 등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고 있다.

0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푸드마켓” 지원금 전달

부산시회(회장 김세원)는 12월 27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청장 김영욱)을 방문하여 부산진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푸드마켓”사업에 지원금 300만원을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정 기탁했다. “푸드마켓”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기부식품 및 생활용품을 무상 제공하여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부산시회 김세원 회장은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해 소외계층을 돕는 손길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건설경제단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항상 나눔과 봉사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회는 매년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계층 및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지원사업을 꾸준히 펼치고 있으며, 올 연말에도 부산시교육청에‘저소득층 학생 지원’을 시작으로 ‘동래구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복지시설 3곳 지원금 전달’, 동구 매축지 마을에 ‘사랑의 연탄나눔 지원금’전달 등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고 있다.

건설공사 수주지원 및 제도개선사업

제도개선

01 2023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발전과제 제출

부산시회는 10월 17일 부산광역시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발전 과제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 했다.

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사 부산전문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방안 마련

- 8조원에 육박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사는 부산에서 시행되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2,300여 부산전문건설업체들은 보다 많은 하도급 참여를 희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부산 경제활성화도 기대하고 있음.
- 그러나, 부산에서 시행되는 대형 국책공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을 주로 하는 부산의 전문건설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적 보호 장치가 없음.
- 가덕도신공항 공사에 “지역전문건설업체 하도급 참여가 50%이상 될 수 있는 우대기준 제정”을 통해 부산전문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 및 지역장비 임대업체 및 자재 생산업체의 동반 성장을 꾀함.

02 발주기관의 부당한 과소 설계사례 조사

- 부산시회는 11월 29일 발주기관에서 예산사정에 따라 부당하게 과소 설계한 사례를 파악하여 정부기관 건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회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는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하여 품셈과 표준시장단가 상향, 낙찰하한율 상향, 계약심사제도 개선, 입찰관련서류 공개, 기초금액 산정 자료 공개 등을 중앙부처에 지속 건의 추진중에 있다.
- 그러나 최근 교육청, 군부대 등 일선 발주처에서는 예산 절감, 부족 등을 이유로 적정공사비를 책정하지 않고 부당하게 삭감 후 설계·발주함에 따라 적정공사비 부족으로 시공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 실태를 조사하게 되었으며, 부당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언제든지 부산시회 경영정책부(☎ 051-633-0260)로 문의하면 된다.

2023년 4/4분기 신기술 현황

지정번호 (지정일자)	개발업체	신기술명	주요 내용
969 (2023.09.27.)	㈜홍익기술단,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코어드릴링법에 의한 콘크리트 중성화 신속평가 및 코어공시체의 침지건조법을 이용한 화재피해 깊이 진단기술	코어드릴링을 실시하여 발생되는 분진을 집진과 동시에 페놀프탈레인 지시약을 분무하여 중성화 깊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 및 평가하며, 화재 구조물인 경우는 중성화 깊이의 신속평가 및 코어 공시체에 침지건조법을 적용하여 화재 피해깊이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다. 특히, 침지건조법의 경우에는 화재에 의해 콘크리트 조직이 이완되는 물리적인 상태변화의 진단으로, 이미지 프로세싱을 이용하여 화재 피해깊이를 진단할 수 있다.
970 (2023.11.03.)	㈜씨지스플랜, 동원건설산업㈜, ㈜성지제강, 대익이엔지㈜	원호 형상의 90도로 절곡된 라운드 앵글과 띠철근을 이용한 선조립 합성기둥(FAC기둥)	중앙부가 원호 형상으로 90도 1단 절곡된 라운드 앵글 또는 중앙부 및 양단부가 원호 형상의 90도 3단 절곡된 리브 라운드 앵글과 그 외측을 다단으로 결합하는 띠철근을 이용한 선조립 합성기둥으로, 앵글 중앙부가 라운드로 되어 있어 띠철근의 부착이 용이하고, 시공성, 자립도 및 내진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FAC(Forming Angle Composite) 기둥 공법
971 (2023.11.20.)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자연과환경, 삼표피앤씨㈜, 코오롱이앤씨㈜	U자형 벽식구조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모듈 상부로부터 박스형 인필모듈을 삽입하는 방식의 탈현장 건설공법	좌우 측벽과 하부 슬래브로 구성되는 벽식 지지구조의 U자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모듈과 바닥, 내벽 및 천정이 공장에서 미리 제작된 박스형 인필(Infill)모듈을 활용하여 인필(Infill)모듈을 PC모듈의 상부 개구를 통해 그 내부에 삽입하는 플러그인(Plug-in) 방식으로 설치하는 저층건축물에 적합한 탈현장 건설공법
972 (2023.12.05.)	㈜철도안전연구소, ㈜케이씨씨건설	유압 시스템을 이용한 능동제어 콘크리트궤도 복원공법(ACBR 공법)	콘크리트 도상의 좌우측에 소정의 간격으로 유압잭을 설치하고 컨트롤박스, 유압유니트, 레벨스위치 등으로 구성된 제어시스템과 연결하여 균일한 인상력을 발휘하고 시공 중 인상 및 하강을 가능케 함으로써 열차 무서행 복원과 시공성을 향상시킨 콘크리트궤도의 복원공법(ACBR 공법)(최대 인상길이 200m, 최대 인상높이 200㎜)
973 (2023.12.05.)	㈜삼림엔지니어링, 탄탄안전㈜	Wireless-Portable 시스템을 이용한 콘크리트궤도 탄성패드 성능평가 기술	열차운행 차단시간 동안 다수의 측점에서 콘크리트궤도 탄성패드의 구조 및 내구성능을 시험 및 평가할 수 있는 무선 궤도시험장비와 시험장비의 운용 및 데이터 분석을 위한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궤도유지관리를 위한 콘크리트 탄성패드 시험기술
974 (2023.12.05.)	㈜지에프시알엔디, ㈜부원지에프씨, 김성수	내황산염 모르타르를 활용한 하수처리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공법(슈퍼에스알공법)	하수박스 등 환경에서 황산염 저항성능을 향상시킨 모르타르와 콜로이드 실리카를 사용하여 장기부착성능을 개선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 사용을 억제하여 사용자 안정성을 확보한 콘크리트 도막재를 이용하며, 굳지 않은 모르타르의 장거리 이송을 가능하게 하여 적용성을 향상시킨 뿜칠장비로 단면 복구하는 콘크리트 보수 및 표면보호공법

지정번호 (지정일자)	개발업체	신기술명	주요 내용
975 (2023.12.05.)	㈜바로건설기술, ㈜반도건설, 에이앤유씨엠 건축사사무소㈜	일방향 중공슬래브를 적용하여 골조 깊이 절감이 가능한 이중보 공법(DBS JOIST 공법)	기둥 위의 주두 양측면을 따라 보를 이중으로 구성하며, 보와 보 사이에는 일방향 중공슬래브를 기둥방향으로 적용하여 넓은 보를 형성하고, 넓은 보와 넓은 보 사이에는 보와 직각으로 일방향 중공슬래브를 적용하는 DBS Joist 공법으로, 보는 주두와 이중보의 효과로 높이가 낮아지고 슬래브는 중공체의 효과로 높이가 보와 차이가 크지 않아 철근콘크리트조에서는 보측면거푸집이 없이 테이블폼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철골조에서는 철골의 하부 플랜지에 데크를 깔아 지하에서는 터파기 감소, 지상에서는 높은 공간의 사용이 가능한 구조 시스템
976 (2023.12.05.)	극동크리트㈜, ㈜행림종합건축사 사무소, 동서하이테크㈜	PVC보강형 방수시트에 가교폼시트를 결합한 복합방수시트와 접합부에 수작업형 폴리우레아를 활용한 복합방수 공법(ALL-IN System)	PVC보강 고분자계시트에 가교폼시트를 결합한 복합시트로써 방수방근 성능을 확보하였으며, 시트 하부면은 사선형태로 음각을 형성하여 수증기를 일정 간격으로 분산시켜 방수층의 부풀음을 방지하고, 누수확산을 구간별로 제어하여 피해를 저감시킬 수 있으며, 접합부는 누구나 쉽게 시공 가능한 수작업형 폴리우레아를 적용하여 시공품질 관리가 용이한 공법
977 (2023.12.11.)	㈜모아산업, 추용대	침투수 배수기능이 적용된 높이 선택형 집수구와 선시공 앵커를 이용한 안전벨트걸이형 교량 배수시설 설치공법	교량 배수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교량 노면수 및 포장 내 발생한 침투수의 원활한 배수를 위해 높이선택형 집수구를 도입하고, 바닥판 콘크리트 타설 전에 설치되는 선시공 매립형 앵커 및 앵커에 연결되는 배관 지지대를 포함하는 교량 배수시설 설치공법
978 (2023.12.11.)	㈜청운구조안전 연구원, 백양엔지니어링㈜	실시간 위치추적장치(RTK-GNSS)와 사진정리시스템을 이용한 절토사면의 현장조사 및 분석기술	실시간 위치추적장치인 RTK(Real Time Kinematic) -GNSS를 기반으로 구성된 시스템을 활용하여 사면내의 점검자와 손상구간의 위치를 실시간 동기화하고 현장조사, 손상물량 산출, 손상부 사진 촬영 및 정리, 전차손상 비교 등이 가능하여 자료정리 및 이력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절토사면 현장조사 및 상태평가 시스템
979 (2023.12.11.)	초석에이치디㈜, ㈜한국항만기술단, ㈜세광종합기술단, ㈜은성오엔씨	콘크해상입도조정골재다짐말뚝(M.A.C.P) 공법	입도조정골재를 사용하고, 기존 장비인 힌지 개폐장치의 공기 가압 수동조정으로 인한 이토 유입, 다짐말뚝 절단 등의 시공품질 개선을 위해, 볼타입 케이싱 및 자동공기 조절장치를 구비한 다짐말뚝 장비를 이용하여, 지반의 강도 증가 및 보강을 위하여 연약지반 내부에 입도조정골재 다짐말뚝을 형성시키고, 압밀촉진을 위한 연약지반 내부의 수직배수재 역할을 하는 도조정골재 배수 기둥을 형성하는 해상 연약지반 개량공법
980 (2023.12.29.)	㈜대련건설,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롯데건설㈜, ㈜유신	콘크리트 거더 가설시 가로보의 길이 조정으로 횡변위 조정이 가능한 강관가로보 및 그 시공방법	콘크리트 거더의 측면에 매입되는 플레이트와 앵커볼트로 구성된 연결부에 공장에 서 제작된 암나사와 수나사로 구성된 스크류부 및 강관부로 구성된 강관가로보를 연결하여 강관 가로보 자체의 길이 조정으로 콘크리트 거더의 횡변위를 보정하는 기술로서 현장타설 콘크리트 가로보의 거푸집과 동바리의 설치 및 해체 작업을 생략할 수 있는 강관가로보 및 그 시공방법
981 (2023.12.29.)	㈜에이치에스드림텍,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삼우아이엠씨	내부양생효과를 증진한 고흡수성수지(SAP) 콘크리트와 철근배근 일체식 자동화 페이버를 이용한 박층연속철근 콘크리트 덧씌우기 포장 공법(UT-CRCP)	안정적인 내부습도 유지를 통해 수축균열 저항성과 내구성을 증진시킬수 있는 고흡수성 수지(SAP)를 첨가한 콘크리트 제조기술과 평탄성 확보를 위한 자동레벨링 센서가 장착된 철근배근 일체식 페이버를 이용한 박층연속철근 콘크리트 덧씌우기 포장 공법(UT-CRCP)

※ 출처 :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www.kcnet.or.kr) → 신기술현황 → 지정현황(건설신기술)

변하지 않는 열정으로 끊임없이 도전하는 건삶인

동우건설(주)
대표이사 이기태

"역풍을 만난 연이 가장 높이 날아오른다!
동우건설(주) 이기태 대표.
이 표현이 딱 맞는 '의지의 건삶인'이다."

얼굴이 까무잡잡하고 눈빛이 형형하다. 한마디로 다부지다. 인생은 힘들고 운은 변덕스럽다. 하지만 그는 약해져선 안 되고, 무력해질 여유조차 없었다. 그래서 그 어렵고 힘든 역경을 딛고 일어서겠다는 의지 하나로 헤쳐나왔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세파에 시달려야 했다. 10남매(이 대표는 아홉째였다)는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웠다. 오죽했으면 학비를 제때 내지 못해 집으로 쫓겨왔을까. 결국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중학교를 중퇴한 그는 살기 위해 원양어선에 몸을 실었다. 그리고 10년간 전 세계 80여 개국을 돌아다니며 거친 물살과 싸워나가야 했다. 식구들을 부양하는 일은 온전히 그의 몫이었다. 형제자매들의 결혼자금도 모두 그가 댔다. "당시 외항선을 타면 생산직 근로자의 5배에 달하는 임금을 받았었죠. 선원 생활을 마치고 뭍으로 올라와 결혼할 때 손에 쥔 돈이 겨우 300만 원이더군요."

단칸 월셋방 생활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부산 영도와 마산 등지 항구를 돌아다니며 선박수리 및 용접일을 하던 그는 세상과 정면 승부를 하기로 결심하고 '노가다'일에 뛰어든다.

이미 온갖 고생을 해본 터라 '노가다'가 좋았단다. "일당에다 상량식을 하기라도 하면 막걸리와 고기까지 실컷 얻어먹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대표에게는 꿈이 있었다. 결코 버릴 수 없는 꿈! 내로라하는 건삶인이 되는 꿈 말이다. 그런데 뭘 알아야 클 게 아닌가.

"그래! 해보자". 자신감이 있었다. 그에겐 꿈을 뒷받침해주는 강철같은 의지가 있었으니까. 공부를 시작했다. 낮에 막노동을 하고 밤에 책을 파고드는 주경야독의 치열한 삶을 살았다. "등짐을 지느라 살가죽이 벗겨지고 피멍이 들어 아팠지만 '내일의 성공'을 꿈꾸며 공부했다. 교재는 보수동 헌책방골목. 시간이 날 때마다 이곳에 들러 건설 관련 헌책 쇼핑을 했다. 책에서 얻은 내용은 반드시 현장에서 꼼꼼히 확인해 산지식으로 만들었다.

철근을 배운지 2년 만에 반장이 되었고, 그로부터 1년 후 일꾼들을 거느린 '오야지'가 되었다. 초고속 성장이었다. 현장소장을 비롯한 간부들의 신임을 독차지했고 큰 도움을 받았다.

"제가 이렇게 어려움을 딛고 일어선 데는 그분들의 도움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직원 복지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들도 또 다른 나이니까요."

12년 전 4명으로 시작한 동우건설이 이제 현장 관리자를 포함해 180명으로 불어났다. 현장 노동자들을 포함하면 2천 명에 이른다.

이 대표에 뇌리에 어려웠던 순간이 떠오른다. 어렵사리 입찰에 성공했는데 시공능력이 안 된다며 쫓겨났을 때 그는 속으로 통곡했더란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납디다. 현장소장이 직접 본사에 찾아가 자신이 보증서겠다며 각서를 쓰고 그 공사를 제게 맡기더군요. 시공능력의 10배가 넘는 대형공사를 맡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는 이 대표가 오야지를 할 때 현장과장을 했다. "왜 저를 도와주셨느냐고 물었더니, 일에 대한 저의 투철한 근성, 도전 정신에 반했다고 하십디다."

부산 오페라하우스 건립공사를 비롯해 부산국제금융센터복합개발 2단계 신축공사 등 굵직한 사업실적을 보면 그의 프로정신을 잘 읽을 수 있다. 지난 3년간 그는 엄청난 누적적자를 봤다. 자재비 인상과 노조 문제 등으로 그동안 쌓아뒀던 적립금을 털어넣어야 했고 물류창고와 부지를 담보로 내놓기도 했다. "특히 물가변동률을 고려해주지 않는 게 큰 문제입니다. 자재 물가는 두 자릿수로 폭등했는데 어떤 건설사에서는 아예 고려해주지 않기도 하더라고요. 거액의 손해를 보면서 일을 해야 했죠. 하지만 제 사전에 포기는 없습니다."

이 대표는 다시 한번 안주하는 회사가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도전하는 회사가 되어야 한다는 거다. 그는 전국에서 손꼽는 전문건설사가 되겠다는 꿈을 위해 결코 도전을 멈추지 않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미래 먹거리를 찾아 해외로도 눈을 돌릴 계획이다. 네옴시티,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공사 등에 참여할 방법을 모색 중이란다.

이 대표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 '꿈과 도전'을 젊은이들에게 강력히 주문한다. 자기권리만 찾지 말고, 법에만 의지하지 말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 꿈을 추구하라는 것이다. "내가 지금 손해 좀 보더라도 소탐대실하지 말고 큰 산을 본다면 장기적으로 큰 이익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건설업만 하더라도 50종 이상의 직종이 있어 마음만 먹고 찾는다면 언제든지 자신에게 맞는 일을 구할 수 있다는 거다. "인맥과 학연, 지연도 없이 허허벌판에서 맨손으로 일어선 제 삶이 암울한 시기를 보내는 젊은이들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대표를 보자니 칭기즈칸의 말이 떠오른다. '젊은이들이여,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고향에서 쫓겨났다…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다. 나 자신을 극복하자 나는 칭기즈칸이 되었다'.

글 **최원열**

변하지 않는 열정으로 끊임없이 도전하는 건삶인

구구건설(주)
대표이사 정중화

"이솝우화에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이야기가 있다.
토끼가 교만한 자의 빠름이라면 거북이는 겸손한 자의 부지런함을 뜻한다.
구구건설(주) 정중화 대표는 후자 쪽이다."

그는 노력으로 고정관념의 틀을 바꿔나가는 건삶인이다. 그는 생각을 바꾸면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고 믿는다.
그는 1999년 9월에 맞춰 회사를 세우면서 구구건설로 명명했다. 꾸준히 이어나가 오래도록 번영하자는 뜻이다.

경남 하동산인 정 대표는 진주서 고교를 다닌 후 상경했다. 시골에서 빈손으로 서울로 향한 건 분명 모험이었건만 강한 의지와 끈기를 지닌 그였기에 괘의치 않았다.

서울에서 그는 닥치는 대로 일했다. 방송사 현장 '노가다'와 시장 점원부터 여행사에서 2년간 근무하기도 했다. 그중 일본 기모노 디자인 회사에서 일할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기모노는 일일이 수작업으로 만들기에 굉장히 비싼 옷입니다". 공들여 일해야 빛나는 작업에서 그는 단연 두각을 나타냈다. 사장이 표창장을 주면서 '기술을 전수해줄 테니 있어달라'고 했지만 그는 거절했다. '나만의 꿈을 이루겠다'는 장기플랜을 품었기 때문이다.

때마침 부산 금호지질 대표로 있던 고모부가 불러 부산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토목일에 입문했다. 그는 고모부 후광을 누릴 수 있었지만 거절하고 말단 현장기능직부터 시작했다. "사무직을 하라고 하셨지만 그래서는 저의 삶을 펼칠 수 없다고 판단했죠.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올라가야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기본기가 탄탄하게 다져지지 않으면 사상누각이 될 거라는 판단을 한 그는 18년간 현장을 두루두루 익히며 섭렵했다. 현장기능공 시절 그는 모든 힘을 쏟아부었다. 서울 송파 석촌호수 지하철 차수공사 때 그는 하루 2시간 쪽잠을 자면서 사흘간 매달렸던 적도 있다. 지독한 근성을 지닌 그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일에 매달리는 바람에 34살이 되어서야 결혼을 할 정도였으니 말해 뭣하랴.

한편으로는 야간대학을 다니며 관련 지식을 쌓아나갔다. 사업을 오래도록 성공적으로 영위하기 위해 창원대에서 토질 관련 석사 학위를 땄고, 동의대 부동산학과 박사과정도 수료했다. 부동산의 흐름을 현업 못지않게 중시했던 그였다.

현장 책임자로 성장한 그는 직원 수십 명을 지휘하며 부산지하철 2호선 사상역과 경성대역, 황령산역 등 차수공사를 성공적으로 해냈다.

그런데 1999년 3월 그는 뜻하지 않게 금호지질을 그만두게 된다. 당시 우방건설을 비롯해 중견기업들의 잇딴 부도로 회사가 큰 손실을 입고 인력 감축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회사에서 남아있으라고 말렸지만 부하직원들이 해고되는 상황에서 자신도 책임져야 마땅하다며 사표를 던졌다. 그리고 반년이 지났을 때 그는 구구건설을 힘차게 출범시키면서 그만의 길에 나섰다.

그는 제주도에서의 성공을 잊을 수 없다. 북제주군 하수처리장 중개펌프장 공사에서 다른 업체들이 모두 차수공사에 실패했는데 정 대표의 구구건설이 나서 4년간의 난공사 끝에 성공시켰다. 기존 도면만 보고서는 도저히 하기 힘든 공사를 거뜬히 해내니 제주도내에서 '잘한다'는 소문이 퍼져나갔고, 구구건설은 이어 제주항과 한림항 차수공사 등을 도맡아 공사하면서 성공가도의 길을 닦았다.

무엇이 난공사를 척척 해내게 했을까. 정 대표는 '메모의 힘'이라고 단언한다. 그는 현장실무를 배울 때부터 메모를 하면서 경험칙을 쌓았다. 각 현장마다 규칙성과 불규칙성, 장단점을 일일이 메모하면서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차수공사의 달인'으로 성장해나갔던 것이다. 엄청난 정보덕에 그는 상황을 다른 각도에서 보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다.

'헬리콥터 뷰'라는 말이 있다. 나를 객관화하는 것이다. 내가 주관적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거나 욕심 초조감 등으로 성급하게 덤벼든다면 십중팔구 실패로 끝난다. 메모 습관으로 형성된 헬리콥터 뷰는 정 대표를 객관적 입장에 서서 바라볼 수 있게 해줌으로써 성공의 길로 이끌었다.

뿐만 아니다. 그는 일본 기업과 공동개발한 토질 및 지반개량 공법을 여러 건 특허로 냈고, 끊임없는 연구 관찰을 위해 라스베가스 등 해외 기술건설 박람회에 가는 등 열성을 다한다.

정 대표는 사업에 있어서 진실하고 성실한 인간 관계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일을 '잘', 그리고 '열심히'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런 일이 있었다. 전남 보성에서 소규모 교량기초 공사를 맡았서 했는데 폭설이 내려 일하기가 힘든 상황인데도 정 대표는 기일 내에 공사를 마치기 위해 기계를 동원해 작업에 나섰다. 이에 탄복한 도로현장소장이 5년 후 그에게 큰일을 맡겼다. "상가에서 우연히 그분을 뵈었는데 갑자기 제 손을 덥석 잡더니 공사를 맡아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250억 규모의 가락 신항배후도로 지하차도 및 도로 차수공사였습니다. 3년에 걸쳐 열심히 했는데 지금도 그곳을 지나가면 흐뭇해지더군요."

그는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 '잘' 그리고 '열심히' 하면 기회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맞는 말이다. 삶은 항상 불확실성에 놓여있다. 언제 어떤 상황이 닥칠지 모른다. 따라서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의 말처럼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글 **최원열**

01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전문공사 보호구간 4.3억까지 확대) 공포·시행 안내

우리 협회에서 생산체계 개편 대응 TF(위원장 김세원)를 구성하여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 대규모 집회, 대정부·국회 건의 등 전방위적 활동을 전개한 결과, 국토교통부에서는 2024. 1. 1부터는 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의 전문공사는 종합건설업체가 수주할 수 없도록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시행하였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법률 제 19865호, (2023.12.29】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주요내용

• 전문공사 보호구간 확대 및 기간 연장(2024.1.1. ~ 2026.12.31.)

– 공사예정금액(부가가치세,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비 포함) 4억3천만원 미만의 전문공사에 대해 종합건설사업자 원도급 수주 제한 (제16조 제1항제4호)

• 전문건설사업자의 종합공사 공동도급(컨소시움 제도) 허용 시행일 3년 유예(부칙 개정)

– (기존) 2024. 1. 1. ⇒ (변경) 2027. 1. 1

2. 시행일 : 2024. 1. 1.부터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 또는 건설법령정보 → 최근개정법령에서 확인 가능하다.

02 |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 안내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10% 이내에서 협의해 정한 비율보다 큰 폭으로 오르내리면 그 변동분에 연동해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위한 주요 원재료 및 연동요건 규정 (법 제2조제16항 및 제17항 신설)

• 주요 원재료 :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

• 연동요건 :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률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협의

❷ 서면 기재사항에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 추가(법 제3조제2항)

•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 목적물 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 지표, 연동 산식,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조정일, 조정주기, 조정대금 반영일 등

❸ 연동 예외사유 규정(법 제3조제4항 신설)

• 원사업자가 소기업(평균매출액 8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기간 90일 이내, 하도급대금 1억원 이하, 연동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원·수급사업자가 합의한 경우

※ 단기계약과 소액계약의 기준은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 가능

❹ 거래상 지위 남용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동제 적용 회피시 5000만원 이하 과태료(법 제3조제5항 및 제30조의2제4항 신설)

• 미연동을 위해 예외조항 악용 등 탈법행위 시 시정명령 및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1차 3000만원, 2차 4000만원, 3차 이상 5000만원) 부과

❺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권장(법 제3조의2제2항 신설)

※ 연동제를 미도입하기로 합의한 경우 표준 미연동 계약서를 작성하여 추후 분쟁 방지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03 | 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일부개정고시 안내

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일부가 개정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23-736호, 2023.12.7.)되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요내용

- 실적신고 및 시공능력평가 업무 위탁기관 조정
  - 신축, 유지보수 공사 여부에 관계없이 종합공사는 대한건설협회, 전문공사는 대한전문건설협회, 기계설비 · 가스공사업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 실적신고 및 시평업무를 담당하도록 조정
- 통합된 시스템을 통해 실적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시 국토교통부가 개선사항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2. 시행일 : 발령일(2023.12.7.)부터 시행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04 |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안내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는 국가계약법령상 입찰관련서류의 나라장터 게재 의무화, 단품슬라이딩제도 적용요건 완화 등을 기획재정부에 적극 건의 추진한 결과, 협회 의견이 반영된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대통령령 제33861호, 2023.11.16.)되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요내용

- 공사 입찰관련서류 전자조달시스템 게재 의무화(제14조 제2항)
  - 보안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관련서류를 전자조달시스템에 의무적으로 게재
- 지명경쟁입찰 대상 금액기준의 상향(제23조 제1항 제2호)
  - 종합공사 : 3억원 → 4억원
  - 전문공사 : 1억원 → 2억원
  - 기타공사 : 1억원 → 1억6천만원
- 단품계약금액조정제도 요건 완화(제64조 제6항)
  - 특정규격 자재의 변동요건 :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액의 1% → 0.5%
- 입찰참가제한처분의 과징금 대체 사유 추가(제76조의2)
  - 현행 입찰참가제한처분의 과징금 대체불가능 사유에서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4호1), 동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1호가목·라목2)을 제외
    1) 사기,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2) 가.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제39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서명법」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를 위조 ·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라.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제94조 제1항)
  - 현행 재량사항인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

2. 시행일 : 공포일(2023. 11. 16)부터 시행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05 |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 안내

조달청에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등 시설공사 집행기준을 개정하였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요내용

• 추정가격 50억 이상 100억 미만 전문공사의 적격심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시 "사고사망만인율"적용

2. 시행일 : '24. 1. 1. 부터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06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예규) 개정 안내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개정하였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요내용

가. 계약이행 부실업체 제재 강화

(1). 부실 설계, 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

• 주요구조 부실설계시 입찰참가자격제한규정 신설

• 감리업체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시공업체와 동일수준으로 강화

* (시공업체) 5월이상 13월미만, (감리업체) 2월이상 4월미만

(2). 금품, 향응 등 제공받은 업체와 계약해지 가능

• (현행) 관계공무원 향응에 한해 계약해지

• (개선) 원·하도급자간, 감리·시공업체간 향응시 계약해지 추가

나. 계약상대자 선정시 부실업체 페널티 강화

(1). 부실벌점받은 기술자와 업체 제재 강화(PQ심사 등)

• (현행) 건진법에 따른 부실벌점시 업체에 한해 감점 적용

• (개선) 업체 외에 기술자 감점 추가, 업체 감점 강화

* 개정이후 받은 벌점부터 적용

(2). 건산법상 시정명령받은 경우, 신인도 감점 추가(30억이상공사)

• 정당한 사유 없이 미시공, 하자담보 미이행, 기술자 미배치, 부실시공 우려 등에 한해 적용

* 개정이후 시정명령 처분부터 적용

(3). 사고사망만인율 신인도 감점 강화(30억이상공사)

• (현행) 사고사망만인율 최대 1점 감점

• (개선) 사고사망만인율 최대 2점 감점

다. 계약상대자 선정시 우수업체 우대

(1). 종합공사 낙찰자 결정시 "직접시공비율" 평가제 도입(30억이상)

• (현행)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 평가

* 하도급금액비율(원도급금액대비 82%) 준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등

• (개선)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 평가 + 직접시공계획 평가

* 하도급관리계획, 직접시공비율(30%이상시 만점, 발주처 재량으로 10%P 조정 가능)

☞ 건설업계 준비기간 등 고려해 1년 유예후 2025년부터 시행

(2). 시공평가 결과 만점기준 상향(100억이상)

• (현행) 공사이행능력평가시 '시공평가 결과'를 심사하고 있으나 토목분야는 대부분 만점으로 변별력 부족

• (개선) 토목분야 시공평가 결과 만점기준 상향(90점→93점이상)

2. 시행일 : 2024. 1. 1일부터 시행(단, 직접시공평가는 2025년부터 시행)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07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시공능력 평가방법 개정) 공포·시행 안내

시공능력 평가방법 개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령 제1292호)이 공포·시행되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요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별표2) 전문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 평가방법 개정)

- 실적평가액 대비 신인도평가액의 상·하한을 ±30%에서 ±50%로 조정
- 신인도평가액의 기존 안전·품질 등 가·감점 수준을 조정하고, 시공평가 등 안전·품질 관련 신규 가·감점 항목을 추가

2. 시행일 : 공포일(2023. 12. 27)부터 시행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08 | 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연장 안내

행정안전부에서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을 연장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87호, 2023.12.29.) 하였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특례기간 연장

- (종전) 2023. 12. 31 → (연장) 2024. 6. 30까지

※ 특례운용 및 연장 목적 :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함.

2. 특례 주요내용

- 경쟁입찰에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수의계약 허용

  * 기존의 경우 재입찰 이후(입찰자, 낙찰자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 가능
- 입찰보증금 50% 인하
  - 입찰금액 대비 5/100 → 2.5/100 이상
- 계약보증금 50% 인하
  - 계약금액 대비 10/100 → 5/100 이상
- 계약이행보증금 50% 인하
  - 계약금액 대비 40/100 → 20/100 이상
- 검사기간 단축
  - 완료통지일로부터 14일 → 7일 이내
- 대가지급 기한 단축
  - 청구일로부터 5일 → 3일 이내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09 | 국가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연장 안내

기획재정부에서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을 연장 고시(기획재정부 고시 제2023-49호, 2024.1.1.) 하였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특례기간 연장

- (종전) 2023. 12. 31 → (연장) 2024. 6. 30까지
  ※ 특례운용 및 연장 목적 :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함.

2. 특례 주요내용

- 경쟁입찰에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수의계약 허용
  * 기존의 경우 재입찰 이후(입찰자, 낙찰자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 가능
- 입찰보증금 50% 인하
  – 입찰금액 대비 5/100 → 2.5/100 이상
- 계약보증금 50% 인하
  – 계약금액 대비 10/100 → 5/100 이상
- 계약이행보증금 50% 인하
  – 계약금액 대비 40/100 → 20/100 이상
- 검사기간 단축
  – 완료통지일로부터 14일 → 7일 이내
- 대가지급 기한 단축
  – 청구일로부터 5일 → 3일 이내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10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 시행 안내

기획재정부에서 코로나19에 따른 내수·민생의 어려움 및 공공계약 참여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을 6개월 연장('23. 12. 31 → '24. 6. 30)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회원사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요내용

- 원칙적 긴급입찰 발주 가능
- 입찰보증서의 지급각서 대체
  * 단, 계약체결 기피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 선금·하도급대금 신속지급
  – (선금) 선금 청구시로부터 14일 → 5일 이내
  – (하도급대금) 대가 지급시로부터 15일 → 5일 이내
  * 신규 계약부터 적용 가능
- 선금지급한도 확대
  – 계약금액 대비 70% 이내 → 80% 이내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11 | 국가계약 예규 개정 안내

기획재정부에서는 전문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진출이 용이하도록 계약예규를 개정·고시하였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요내용

• 전문업체의 10억미만 종합공사 참여시 각 전문업종별 실적 단순합산 평가 제도를 '26년 말까지 적용

2. 시행일 : 2024.1.1.부터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01 | 건설현장 품질시험비용 관리 철저 협조 요청 안내

품질시험검사 시장에서 지난 십 수년동안 비정상적인 가격에 품질시험을 진행해 왔다는 부조리가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사와 품질검사 대행기관 간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품질검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 건설기술 진흥법상 품질관리비는 정산하여야 하며, 품질검사 대행기관과 100% 단가로 계약시에는 설계내역에 100% 정산이 가능하며, 딜러와의 계약은 품질검사 기관과의 계약이 아니므로, 딜러와의 계약금액을 정산 내역에 반영 시 불법에 해당함.

국토부는 이 같은 품검업계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현장점검을 통한 대응책 마련을 검토중에 있으므로, 건설현장에 대한 품질관련 점검 이행실태를 철저히 확인하여 향후 위반사항 적발 시 영업정지, 과태료 및 벌점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02 |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시범운영 안내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도입하는 원-수급사업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등 현장에서 하도급거래 원-수급사업자를 지원할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를 `23.10.30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다.
지원본부 시범사업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하도급대금 연동제 확산을 위한 교육 홍부

- 지역별·업종별 교육프로그램에 하도급대금 연동제 소개, 적용사례, 유의사항 등 교육과정 추가
  - 거래상대방이 다수인 기업, 교육을 희망하는 분야 원·수급사업자 대상 온·오프라인 교육 병행 추진
- 지원본부 공식 블로그,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한 온라인 홍보 및 안내서(브로슈어), 소책자(핸드북) 배포를 통해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대한 이해도 제고

2. 하도급대금 연동제 관련 상담

- 연동제 대상계약인지, 주요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기준지표 선정 등 기업 애로사항에 대한 서면·대면 상담 및 맞춤형 상담(컨설팅) 제공
  ※ 상담문의 : 대표번호 (☎ 1855-1490)
  연동제 관련문의·상담 (☎ 02-6363-9211, 9217)

3. 하도급거래 분쟁조정제도와의 연계 지원

- 연동계약 체결 및 연동의무 이행과정에서의 불공정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대금미지급 등의 분쟁에 대한 조정신청 및 조정절차 진행
- 연동제 적용대상(주요 원재료) 이외의 공급원가 변동시의 하도급대금 조정에 관한 분쟁에 대해서도 조정신청 및 조정절차 진행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03 | 건설안전정보 통합 제공 플랫폼 신규 구축 안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다양한 건설안전 정보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일일 건설안전관리 상황판'을 신규로 구축하였다.

접속방법

① 공단 홈페이지 (www.kosha.or.kr) 「자주 찾는 메뉴」

②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통합지원시스템 (www.kosha.or.kr/constplan)

04 | `23년-`24년 한파 대비 한랭질환 예방 관련 자료 안내

한국안전보건공단에서 최근 3년 기준 한파 기상특보 발령 증가 추세에 따라 한랭질환 예방 가이드를 배포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05 | 2024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계획 안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2024년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계획」을 확정·공고함에 따라 부산시회는 관련 내용을 회원사에 안내했다.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06 | 외국인 근로자 다수 고용 사업장 빈대 확산 방지 안내

최근 부산광역시는 외국인 기숙사 시설 등 시설에서 빈대 발생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건설업을 비롯한 외국인 근로자 다수 고용 사업장에서 빈대 발생 우려가 없도록 빈대확인 및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와 빈대정보집 제2-1판을 제작하였다.
또한 '부산광역시 누리집 팝업창' 등을 활용하여 빈대에 의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 부산광역시(busan.go.kr) / 분야별정보 / 보건·건강 / 침대속 흡혈귀 빈대
※ 빈대정보집과 체크리스트를 포함한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07 | 조달청 공사내역서 작성 실무가이드 안내

조달청에서는 다양한 실무사례와 유권해석을 토대로 시설공사 산출내역서를 작성하거나, 검토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공사 내역서 작성 가이드를 배포하였기에 회원사에 관련내용을 안내하였다.

※ 산출내역서 작성 실무가이드는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08 | 2024년 설 명절 대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설치·운영

공정거래위원회는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설 명절을 앞두고,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를 신속히 처리하여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자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사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안내했다.

1. 운영기간

2023. 12. 18. ~ 2024. 2. 7.

2.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T : 051-460-1045, F : 051-460-1004)

3.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주요 사례

-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지급하는 행위
- 하도급대금을 장기어음 등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어음대체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급(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초과)하는 행위

•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현금지급하거나,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일(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보다 장기의 어음을 교부하는 행위 등.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09 | 「2024년도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 접수 안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중소규모 건설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24년도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24년도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1. 지원대상 : 전문건설업체 등 (컨설팅 기 참여자 중복 제외)
2. 신청기간 : 2023.12.15. ~ 예산 소진시까지
3. 접수방법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설문시스템을 통한 신청
4. 비용부담 : 시평액 순위에 따라 소정의 수수료 부담
5.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실담당 (☎ 052-703-0689)에게 문의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10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 안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신고업무 개선을 위한 전자카드제가 '24. 1. 1부터 퇴직공제 의무가입 대상공사로 전면 확대 시행되었으며, 아울러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업주 부담 완화를 위해 전자카드 단말기 대신 모바일 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카드제 확대시행 주요내용

• **근거법령**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등
• **대상공사** : 공사예정금액 공공 1억원 이상, 민간 50억원 이상
• **적용시기** : '24. 1. 1 이후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
※ 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 도급계약체결일 기준
• **주요내용**
–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 의무(원수급인)
☞ 소규모 건설현장 등의 경우* 사업주가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지 않고 근로자가 모바일앱** 활용하여 신고 가능
*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또는 단말기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자카드근무관리앱」: '23. 12월 중 출시, '24. 1. 1부터 사용 가능
– 전자카드* 발급 의무(원수급인. 인정승인시 하수급인)
* 「건설올패스카드」 : 근로자가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 방문하여 발급
※ 미발급시 과태료(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단말기에 출퇴근 내역 기록(근로자)
–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에서 전자카드 운영에 필요한 금액 정산(발주자)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11 | 동절기 건설현장 자율 예방활동 강화 협조 안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동절기 건설현장의 자율적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 할 수 있도록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 및 OPS」를 발행하였기에 해당내용을 회원사에 안내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12 | 「2024년 건설업 노무 관련 달라지는 제도」 안내

부산시회는 2024년도 달라지는 건설업 노무 관련 제도에 대해 회원사에 안내했다.

- **건설업 외국인력(E-9) 쿼터 확대 및 숙련기능인력(E-7-4) 접수**
  - 건설업 외국인력(E-9) 쿼터 역대 최대규모 편성
    * ('23년) 3,619명+탄력배정 1만500명→('24년) 6,000명+탄력배정 2만명
  - 건설업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국토부 추천 운영방안 접수
    * 쿼터(건설업 300명) 마감 전 이메일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 (tongnamu78@korea.kr)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확대 시행**
  -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및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제가 퇴직 공제 의무가입 공사로 전면 확대 시행
    * 자세한 내용은 동 발간지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 안내" 참조
- **2024년 최저임금 시간당 9,860원 적용**
  - ('23년) 9,620원 → ('24년) 9,860원(월 환산액 2,060,740원)
- **건설업 월평균보수액 ('23년도) 4,647,165원 → ('24년도) 4,786,620원**
- **장애인 고용부담 기초액 인상 : ('23년도) 1,207,000원 → ('24년도) 1,237,000원**
- **산재보험료율 인하 : ('23년도) 3.7% → ('24년도) 3.56%(출퇴근 재해 0.06% 포함)**
- **건강보험료율 동결**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13 | 2023년도 건설(전문)공사 실적신고 및 2024년도 시공능력평가 안내

부산시회는 2023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 접수를 2024. 2. 15(목)까지 방문 및 인터넷 접수하며,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결산 재무제표 증명원의 경우 2024. 4. 15까지(개인의 경우 2023. 5. 31.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후에는 접수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접수 바랍니다.

※ 2023년 실적신고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 신고업체의 건설공사실적, 재무상태, 기술능력, 대외 신인도 등을 기준으로 함.

01 2023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

실적신고 대상업체

- 신고일 현재 전문건설업 등록업체로서 시공능력 평가·공시를 희망하는 업체

접수기한

- 공사실적 관계서류(1차) : 2024. 2.15(목)까지
- 재무제표 관계서류(2차) : 2024. 4.15(월)까지(개인 2024. 5.31(금)까지)
  - ※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 2024. 6.24(월)까지 제출
  - ☞ 상기 기한 이후 실적신고 접수는 일체 불가

접수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제출서류

- 통합실적관리시스템에서 작성된 서류를 출력하여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

유의사항

- 실적신고는 통합실적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작성·제출
  - ※ 통합실적관리시스템 접속하기 : https://www.icms.or.kr
  - – 수기 또는 한글프로그램을 이용한 서류작성 및 신고는 인정되지 않음
  - – 실적신고서 작성안내서 배부 : 각 시·도회 사무처 및 실적신고 시스템
- 2022년 1월 1일부터 발주되는 건설공사는 공사유형을 신설 및 유지보수공사로 구분하여 신고 (이전 발주공사는 유형 구분 없이 신고)
  - ※ [주의] 신설공사와 유지보수공사 모두 상기 시스템을 통하여 '협회'로 신고
- 2023년도에 공사실적이 없는 업체의 경우 무실적으로 신고를 하여야만 시공능력평가를 받을 수 있음
  - ※ 공사실적이 없어도 기술자(기술능력평가액)와 자본금(경영평가액)으로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가능
- 여러 건으로 계약·시공한 공사를 1건 공사로 신고하거나, 단일 업종으로 계약·시공한 공사의 부대공종을 여러 건으로 나누어 신고하는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2023년 실적신고는 2023.12.31일 현재 신고업체의 건설공사실적, 재무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기준으로 함

- 실적신고는 2023. 1. 1 ~ 12.31일까지의 건설공사실적을 신고하는 것임(2023년 신규등록업체는 등록일로부터 2023.12.31일까지의 실적을 신고)
- 건설기술자는 건설업등록기준에서 인정하는 건설기술자로 2023.12.31일 기준 회사에 상시근무하는 자에 한하여 인정(2023.12.30일 퇴사자, 일용직 건설근로자는 인정되지 않음)
- 신고금액은 천원단위(천원미만 절사), 부가세(VAT) 포함 금액 입력(기재) 단, 재무제표는 원단위로 입력

• 건설업 이외 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수리, 물품구매 및 납품, 장비임대·조사, 타워크레인, CCTV촬영·설치, 용역(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은 제외
※ 다만, 물품납품·용역으로 계약했으나 해당 건설업 등록과 시공(현장설치)을 입찰참가자격으로 제한하고 건설공사실적증명서 발급시 실적 인정
• 유사건설공사(물품·납품·용역)의 경우 시공능력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KISCON에 건설공사대장 통보해야 함
•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공사원가명세서 포함),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반드시 세무대리인의 확인(간인)을 받은 원본 제출
- 손익계산서상 건설매출액, 공사수입금 항목이 나타나야 함
- 실적신고 금액이 재무제표상 매출액보다 10%(부가세)이상 초과한 업체는 소명서, 기타 건설업 매출이 있는 경우는 증빙서류를 제출

• 건설기술자(기능사)는 해당업종 등록기준에서 인정하는 기술자만 인정, 건설기술자 1인이 여러 종류의 기술분야 또는 국가기술자격과 학·경력기술자격을 동시에 보유한 경우 등록기준에 의하여 인정받고자 하는 1개 기술자격만을 선택하여 보유업종에 적용함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경력 신고하여 학·경력자 자격등급을 취득한 건설기술자는 기술인협회 자료로 평가하므로 자격증 사본 등 증빙서류 제출 제외 가능
• 2021년, 2022년 공사실적 전체 또는 일부를 누락한 경우 2023년 실적신고 시 함께 제출(각 연도별 신고)할 수 있음
• 2023년에 실제 준공 처리되고 기성실적증명(신청)서도 발행되었으나, 세금계산서는 2024년에 발행된 경우라도 2023년 공사실적으로 인정
• 신고서류 중 누락 또는 불명확한 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보완하여야 하며 불응시 보완·제출 전까지 시공능력평가 불가(건경 16070-862, 2003.9.1)
• 신고서류는 원본으로 제출, 사본제출 가능 서류는 필히 원본대조필 날인[(하)도급계약서, 자격증(경력증), 신기술지정, 우수건설사업자 지정 등]
• 기성실적을 증명서류 제출 시 실적 증명(첨부)서류의 확인이 용이하도록 증명(첨부)서류 하단(도급계약서, (재)하도급계약서는 하단,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비고란)에 각 공사건별 기성실적신고서(내역표)(서식5-1)의 일련번호를 표기
• 공공공사 관급자재액과 관련하여 수급인이 해당 발주자가 구입한 자재를 공급받아 설치 시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6-1) 확인을 받고 제출한 경우 해당공사에 대한 공사실적평가액 설치금액의 50% 가산
• 직접시공 실적을 공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 직접시공분 기성실적증명(신청)서(6-2 및 6-3)을 발주자 등에게 확인 받고 제출하여야 인정 및 공시 가능
•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됨에 따라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수주한 경우* 전문업종 및 주력분야 시공능력평가 시 해당 실적을 반영하며 전문공사 실적과 별도 구분 관리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 공사로써 아래 날짜 이후의 공사
·공공공사 : 2021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된 공사
·민간공사 : 2022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된 공사
(입찰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 '도급계약 체결')
※ 종합공사를 전문공사로, 전문공사를 종합공사로 신고하지 않도록 유의
※ 종합건설사업자 자격으로 종합공사를 수주한 경우 대한건설협회로 신고

• 전문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조건으로 다른 건설사업자(부계약자)와 공동도급 받은 경우 실제수행한 부분과 부계약자 공사실적의 1/2 실적 인정(건산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0항제4의2호)
•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으로 전문건설업종 대업종화 및 주력분야 평가 공시제 도입·시행('22. 1. 1)

-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으로 전문건설업종을 대업종화*(28개→14개)하고 이에 따른 주력분야를 관리토록 함에 따라 업종 및 주력분야 단위 시공능력평가 산정·공시

*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22. 1. 1)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는 해당 업종의 모든 업무분야의 공사를 수행할 수 있으나, 민간 발주 공사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주되는 공사부터 가능('22. 12. 31. 이전 발주된 민간공사는 주력분야를 등록한 업무분야 공사만 수행 가능). 다만, 수중 · 준설공사업, 승강기 · 삭도공사업을 등록한 자는 주력분야의 공사만 수행할 수 있으며, 주력분야가 아닌 다른 업무분야의 공사는 수행할 수 없음

- 업종 실적과 주력분야 실적이 별도 구분 관리됨에 따라 개별 신고 공사건별 업종과 주력분야를 정확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신고해야 함 (※ 누락 내지 오기 확인 등)

실적신고 서류 거짓 제출 시 제재사항

-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때의 다음연도부터 3년간 시공능력평가 시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가중평균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뺌(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2 제1호라목(8))
-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보유현황, 재무상태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 부과(건설산업기본법 제97조 제2호)
-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보유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때에는 영업정지 6월 또는 1억 이하 과징금 부과(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제3호)
-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불법·불공정 행위의 건설공사실적 인정 범위

- 허위실적신고
  - 시공능력공시를 위하여 건설공사실적, 기술인보유현황, 재무상태를 거짓으로 신고한 자(법 제82조제1항제3호, 법 제97조제2호)

☞ **(공사실적 인정 범위)** 불인정
※ 수사기관 고발, 영업정지 6월, 부정당업자 제재, 시공능력 삭감

- 전문간하도급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 할 수 없음(법 제29조제2항, 법 제82조제2항제3호)

☞ **(공사실적 인정 범위)**
○ 발주자의 서면승낙을 받은 경우(서면승낙서는 하도급 계약 체결 전에 작성된 경우만 인정)
  – 하도급 준 자 : 실제수행한 부분과 하도급 준 공사실적의 1/2 실적 인정
  – 하도급 받은 자 : 하도급 공사 실적 인정

- 일괄하도급
  건설사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음(법 제29조제1항, 법 제82조제2항 제3호, 법 제96조)

☞ **(공사실적 인정 범위)**
– 일괄하도급 준 자 : 실제수행한 부분만 실적 인정
– 일괄하도급 받은 자 : 불인정

- 재하도급
  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 할 수 없음(법 제29조제3항, 법 제82조제2항제3호, 시행규칙 제23조10항)

☞ **(공사실적 인정 범위)**
○ 발주자와 수급인의 서면승낙을 받은 경우(서면승낙서는 하도급 계약 체결 전에 작성된 경우만 인정, 100분의 20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하도급 가능)
  – 재하도급 준 자 : 실제수행한 부분과 재하도급 준 공사실적의 1/2 실적 인정
  – 재하도급 받은 자 : 재하도급 공사 실적 인정

- 종합공사 하도급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해당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음(법 제29조제5항, 법 제82조제2항제3호, 시행규칙 제23조10항)

☞ **(공사실적 인정 범위)**
○ 발주자의 서면승낙을 받은 경우(서면승낙서는 하도급 계약 체결 전에 작성된 경우만 인정, 100분의 20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도급 가능)
  – 하도급 준 자 : 실제수행한 부분과 하도급 준 공사실적의 1/2 실적 인정
  – 하도급 받은 자 : 하도급 공사 실적 인정

- 직접시공 위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그 공사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시공 해야 함(법 제28조의2, 법 제82조제2항제2호)

☞ **(공사실적 인정 범위)**
– 하도급 준 자 : 실제수행한 부분만 실적 인정
– 하도급 받은 자 : 적법하게 하도급 받은 비율만 인정

- 영업정지처분 위반 계약체결
  법 제82조 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함(법 제83조제8호)

☞ **(공사실적 인정 범위)** 불인정

허위·과다신고 등의 유형

- 관급자재액을 포함하여 공사실적을 신고한 경우
- 공동도급공사의 타사 시공액까지 포함하여 공사실적을 신고한 경우
- 전년도에 기 신고한 공사실적을 당해연도 공사실적으로 이중 신고한 경우(업종을 달리하여 이중 신고한 경우 포함)
- 기성실적증명서를 위·변조하여 신고한 경우 : 공사금액 단위 앞 또는 뒤에 숫자를 변조(추가) 기재한 경우 등
- 건설업 이외 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수리, 물품구매 및 납품, 장비임대, 조사, 타워크레인, CCTV촬영·설치, 용역(설계용역, 운영위탁용역) 등의 내용을 공사실적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 (하)도급 받은 공사의 당해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으로 공사실적을 신고한 경우
- 해외건설협회에 미신고된 해외건설공사를 실적신고 한 경우
- 미기성분을 포함하여 공사실적을 신고한 경우
- 변경감액 된 공사금액을 반영하지 않고 공사실적을 신고한 경우
- 선급금 또는 지연이자 포함하여 공사실적을 신고한 경우
- 단체수의계약에 의한 물품(자재)의 구매내용을 신고한 경우.
  단, 입찰참가 자격을 해당건설업 등록과 시공(현장설치)으로 제한하고,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서 발급시는 실적 인정이 가능함.

02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 제도

시공능력평가란?

-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건설사업자의 건설공사실적, 재무상태, 기술능력, 대외신인도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

시공능력평가액의 공시

- 대한전문건설협회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전문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 평가·공시 및 건설공사실적 등의 신고 처리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음
- 이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7월말 협회 정보통신망 등에 공시하고 일반인이 시공능력에 관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며 건설업 등록수첩에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재함

실적신고의 법적신고 기한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매년 2.15일까지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를, 4.15일까지는 재무제표를 제출하도록 규정
-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기한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유권해석(국토부 건경58113-139호, 2001.2.7)이 있어 접수기간 이후 실적서류 접수 불가

시공능력평가의 활용

-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건설공사의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3항)
-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수급인이 있을 때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음(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제3항)
- 제한경쟁입찰에 있어서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입찰참가자를 제한할 수 있음(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
- 종합건설업체의 협력업체 등록 심사자료 활용

03 2024년도 시공능력평가·공시 절차

실적신고 동영상 강의	대한전문건설협회 홈페이지(https://www.kosca.or.kr)에서 시청가능
or	
실적신고 강습회 실시	대한전문건설협회 시·도회 (※ 개별 여건에 따라 개최)
↓	
실적신고서 작성	통합실적관리시스템(https://www.icms.or.kr)에 로그인하여 실적신고 자료 입력
↓	
실적신고 증빙서류 준비 및 확인	• 공사실적신고 증빙서류 – 기성실적증명서 확인(발주자 또는 원도급자)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 • 재무제표(세무대리인 확인 필) • 기술능력평가 증빙서류 – 건설기술자자격증(경력증)사본,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4대보험 가입확인서류, 기술개발투자비지출확인서 등 • 신인도평가 증빙서류
신고서류 제출	• 온라인으로 작성한 실적신고서류 출력 및 편철 • 미비서류 확인 • 신고서류 제출 – 공사실적 관련서류 : 2. 15(목)까지 제출 – 재무제표 (법인) 4. 15(월)까지 제출 (개인) 5. 31(금)까지 제출
↓	
공사실적 확정	• 공사실적 확정 및 증명발급 개시 : 6. 1 (예정)
↓	
시공능력평가액 공시	• 시공능력평가액 공시 : 7월말 – 공시방법 : 협회 정보통신망
↓	
시공능력평가액 기재	• 8. 1(목)부터 – 기재장소 : 각 시·도회 사무처

04 전문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 방법(건산법 시행규칙 별표2)

【시공능력평가액 = 공사실적평가액(1) + 경영평가액(2) + 기술능력평가액(3) ± 신인도평가액(4)】

공사실적평가액

공사실적평가액 = (최근 3년간 해당업종의 건설공사실적 연차별 가중평균액 ÷ 해당업종별 영위기간의 인정계수) × 70/100

※ 인정계수 : 1년 미만=1, 1년 이상 3년 미만=건설업영위월수/12, 3년 이상 = 3

※ 건설업영위월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절사함

※ 최근 3년간 해당업종의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
(3년 미만 업체의 경우는 단순평균)

【(평가년도 이전 1차년도 공사실적액×1.2)+(평가년도 이전 2차년도 공사실적액×1)+(평가년도 이전 3차년도 공사실적액×0.8)】÷ 3

- 법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4항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로써, 직접시공해야 하는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를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고 직접 시공한 경우
  - 직접 시공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사실적으로 합산할 수 있다. (직접시공한 금액에 대하여 발주자의 확인서를 제출)

경영평가액

경영평가액=(실질자본금× 경영평점) × 80/100

(1) 실질자본금

-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으로 한다.
- 건설업외의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자인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에서 겸업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되, **평가년도 직전년도에 건설업을 신규로 등록**한 경우 산정된 실질자본금이 건설업 등록기준 이하인 때에는 등록기준상 자본금을 실질자본금으로 한다.

① **차입금의존도평점** = 업계전체가중평균비율 ÷ 차입금의존도비율
【차입금의존도비율 = 차입금*/총자산 × 100】

② **이자보상비율평점** = 이자보상비율 ÷ 업계전체가중평균비율
【이자보상비율 = 영업이익/이자비용 × 100】

③ **자기자본비율평점** = 자기자본비율 ÷ 업계전체가중평균비율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총자본 × 100】

④ **매출액이익율평점** = 매출액순이익율 ÷ 업계전체가중평균
【매출액순이익율 = 법인세(소득세)차감전 순이익/매출액 × 100】

⑤ **총자본회전율평점** = 총자본회전율 ÷ 업계전체가중평균비율
【총자본회전율 = 매출액/총자본】

참/고/사/항	* 차입금 항목(예시)
유동부채	
· 관계회사단기차입금	· 유동성외화장기부채
· 단기차입금	· 유동성장기차입금
· 단기사채	· 유동성장기부채
· 단기융자금	· 유동성장기채무
· 당좌차월	· 유동성외화장기차입금
· 어음차입금	· 유동성전환사채
· 유동성사채	· 주주임원종업원단기차입금
· 외화단기차입금	· 가수금
· 유동성금융리스미지급금	· 위 계정과목외 차입금
· 유동성금융리스부채	
비유동부채	
· 관계회사장기차입금	· 외화신주인수권부사채
· 교환사채	· 장기외화차입금
· 국민주택기금(차입)	· 장기융자금
· 금융리스미지급금	· 장기차입금
· 금융리스부채	· 전환사채
· 금융리스장기차입금	· 주주임원종업원장기차입금(채무)
· 사채	· 차관
· 신주인수권부사채	· 가수금
· 외화금융리스부채	· 위 계정과목외 차입금
· 외화사채	

경영평점=(①차입금의존도평점+②이자보상비율평점+③자기자본비율평점+④매출액순이익률평점+⑤총자본회전율평점)÷5

- 이 경우 각 각의 평점이 3점을 초과할 때 "3", −3 이하인 때에는 "−3"으로 함.
- 업계전체가중평균비율은 **이자보상비율**, **자기자본비율** 및 **매출액순이익율** 중 "0"이하인 **비율을 제외**함
- 경영평점이 3을 초과한 때에는 "3"으로, −3 이하일 때에는 각각 "−3"으로 함
- 경영평점이 **0미만일 경우 경영평가액은 "0"**이 되도록 평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0 미만인 때 0에서 **공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 위 경영평가액의 산식 중 실질자본금이 "0" 미만인 때의 경영평가액은 "0" 에서 공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경영평가액은 "0"에서 공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공사실적평가액이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보다 적거나 많은 경우

- 공사실적평가액이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보다 적은 경우의 경영평가액은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의 ±6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공사실적평가액이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 이상인 경우의 경영평가액은 공사실적평가액의 ±6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기술능력 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 = 기술능력생산액(전년도 동종업계의 기술인 1인당 평균생산액 × 보유기술인수 × 30/100) + (퇴직공제납입금 × 10)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액

(1) 기술능력생산액

- 실질자본금의 2배 또는 공사실적평가액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함
- 전년도 동종업계의 기술인 1인당 평균생산액 : 전문건설업계의 국내 총기성액을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기술인의 총수로 나눈 금액
- 보유기술인수 : 매 연도말 현재 해당업종의 건설업 등록기준에서 인정하는 기술인수

♧ 건설기술인 반영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술인

- 초급기술인 : 초급기술인 수 × 1인
- 중급기술인 : 중급기술인 수 × 1.15인
- 고급기술인 : 고급기술인 수 × 1.3인
- 특급기술인 : 특급기술인 수 × 1.5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인

-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장, 기능사, 기능사보 : 기술인 수 × 1인

- 건설업체 설립시 그 대표자가 최초 건설업 등록일 기준으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의 가입경력이 5년 이상이고, 공제부금을 500일 이상 납부한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국토교통부령 제614호, 2019. 3. 26), 2019. 8. 1시행】**
- 대표자가 최초로 건설업체를 설립하여 건설업을 등록한 날이 속한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시공능력평가에 한정하여 그 건설업자가 보유한 기술인 중 해당 업종의 건설업등록기준에서 인정하는 기술인에 대해서는 현행 가중치에 2를 각 각 곱하여 산정함.
- 기술능력생산액은 실질자본금의 4배를 초과하지 아니함.

(2) 퇴직공제 납입금 × 10

- 퇴직공제납입금은 전년도 중,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근로자 공제회에 공제부금으로 납입한 금액

(3) 기술개발투자액

- 기술개발투자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해당 연도의 연구 · 인력개발비 발생 명세상의 금액 중 건설업에 실제 사용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실질자본금과 공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50 중 큰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신인도 평가액

신인도 요소별 평가액의 합계액은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50/100[(8)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0/100]을 초과할 수 없음.

(1) 신기술의 지정, 우수건설업자 지정된 업체

-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건설공사와 관련된 신기술로 한정)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 건설기술진흥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건설업자로 지정된 자인 경우 최근 3년간 공사실적 연차별 가중평균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더함.
- 이 경우 동일분야에서 2개 이상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1개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함

(2) 건설업 영위기간

- 동일업종의 전문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각 더함

(3)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업체

- 직전영업연도에 법제82조제1항1호 · **제2항제3호 및 제5호, 제6호**, 제82조의2 및 법제83조제10호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 최근 3년간의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에 영업정지기간(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과징금에 상응하는 영업정지 기간)인 월수를 곱한 금액을 뺌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1호(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할 때) / **제2항제3호(수급인 자격제한 위반, 하도급 제한 위반)**, 제5호(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제6호(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82조의2(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으로 영업정지 등을 받은 경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0호(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惹起)하여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4) 기준재해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6호)

- 직전영업연도 중에 **평균 사망사고 만인율의 1배 이상 1.5배 이내의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평균 사망사고 만인율의 1.5배 초과 2배 이내의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평균 사망사고 만인율의 2배를 초과하여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뺌

※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시공능력평가시 공사실적액의 감액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경우

(5) 부도업체

- 최근 3년 이내에 부도가 발생한 건설업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뺌

(6) 환경관리 및 건설폐기물 처리실태 우수업체 : 〈2021. 8. 31 삭제〉

(7) 국내인력을 해외건설현장에 고용한 건설업자

- 고용인원수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더하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2/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금액의 2배를 더한다.
  - 고용인원수가 1~50명 미만인 경우 최근 3년간의 연차별 가중 평균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 고용인원수가 50~500명 미만인 경우 최근 3년간의 연차별 가중 평균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
  - 고용인원수가 500명 이상인 경우 최근 3년간의 연차별 가중 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고용인원수는 건설공사 실적신고 대상연도를 기준으로 하되, 3개월 이상 체류한 인력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해당 업체가 고용하고 직접 인건비를 지급하는 인력만 해당하며 하도급업체가 고용한 인력은 제외
- 해외건설촉진법 제23조에 따라 해외건설협회장으로부터 해외건설현장에 고용된 국내인력에 대하여 해외건설현장 인력고용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해외건설협회의 장은 출입국증명원,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확인서를 발급 함.

(8) 건설공사 실적 등의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허위제출 사실이 확인된 때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시공능력평가시 최근 3년간의 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뺌

(9) 공사대금 체불 및 상습체불업체

- **평가연도 직전 연도 중에 법 제34조 제1항(법 제3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및 제4항을 위반하여 법 제81조제4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뺌**
- 법 제86조의4 및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전년도에 상습체불건설업자 또는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건설업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뺌

(10) 건설기술인교육 이수한 자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평가기준이 직전년도에 건설기술인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기술인 1인당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4를 초과할 수 없음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따라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

- 평가년도 직전년도 중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차별 가중 평균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제9호 및 제2항, 제47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제1항 또는 제3항

(12)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결과가 우수한 건설사업자**
(국토교통부령 제627호, 2019. 6. 19)【2020. 8. 1시행】
• 제48조의2제1항 규정에 따른 건설 근로자 고용평가 결과가 우수한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차별 가중 평균액의 다음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함.

구분	등급배분 기준	고용평가 등급	가산비율
전문건설 업체	상위 30퍼센트 미만	1등급	6/100
	상위 30퍼센트 이상 상위 70퍼센트 미만	2등급	5/100
	상위 70퍼센트 이상	3등급	4/100

(13) **건설사업자가 민간공사 현장에서 일체형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경우**(국토교통부령 제704호, 2020. 3. 2)【2020. 8. 1시행】
: 평가년도 직전년도 중에 일체형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감리자 등의 확인서 제출
• 일체형작업발판 설치비율이 30% 미만인 경우 : 최근 3년간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일체형작업발판 설치비율이 30% 이상 40% 미만인 경우 : 최근 3년간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 일체형작업발판 설치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 최근 3년간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2020년 1월 1일부터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부터 적용

(14) 평가년도 직전년도 중에 법 제81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에 해당 시정명령 횟수를 곱한 금액을 뺀다.

(15) 평가년도 직전년도에 건설사업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대재해를 유발하여 동법 제6조 및 제7조, 제10조, 제11조에 따라 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16) 평가년도 직전년도에「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법 제57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법 제65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17) 평가년도 직전년도에 건설사업자가 법 제38조의4제3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에 해당 포상 횟수를 곱한 금액을 더한다.

기타사항

(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건설업의 등록을 한 건설사업자와 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을 양수한 건설사업자의 당해연도 시공능력 및 다음연도 시공능력을 산정함에 있어서 경영평점은 "1"로 한다. 다만, 건설업을 영위하던 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의 등록을 하거나 건설업을 양수한 경우에는 이미 평가한 경영평점을 적용할 수 있음.

(2) 2이상의 전문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거나 둘 이상의 주력분야를 등록한 건설산업자의 시공능력평가시 업종별·주력분야별로 구분하여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경영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 신인도평가액을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3) 산정한 시공능력평가액이 **"0"이하인 경우**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은 **"0"**으로 한다.

유권해석

건설업 실질자본금 퇴직급여충당금 인정 여부

질의

전문건설업 면허를 갖고 있는 법인입니다. 건설업등록기준 자본금 미달 의심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자료를 요청받아서 작성중 입니다. 궁금한것이 있어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도 결산을 담당했던 직원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으면 실질자본금 미달에 해당이 되지않는데 2017년도에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해 놓은 자료를 검토하고 있는 담당 주무관님은 실질자본금에 미달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 않해도 세법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무재표 작성시 퇴직급여 충당금을 설정해야 하는지와 설정이 않되어 있더라도 계상을 해서 차감 또는 증감을 하는지요. 이러한 상황에 건설업등록기준(자본금) 미달업체에 해당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퇴직급여충당금 만큼(천만원)의 자본금 미달인 상태입니다. 건설업영업정지 라는 행정 처분을 받게된다면 저희 같은 소기업체는 너무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예외규정이나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

- 건설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에 관한 사항은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제2조에 따라 이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 퇴직급여충당금은 같은 지침 제25조 제3항에 따라 충당부채로 분류되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실질자산에서 차감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민원과 관련하여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설산업과(044-201-3510, 담당 권영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국민신문고 전자민원, 2019.04.08

유권해석

전문건설업 사무실 자본금 적용 여부

질의

전문건설업 면허 보유 법인 명의의 오피스텔이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신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건설업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 자본금, 보증가능금액, 사무실, 시설 및 장비등을 갖추어 업종별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건설업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2015-113호, '15.8.20) 별지2 건설업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23조에 따르면 유형자산은 토지, 건물, 건설중인자산 및 그 밖의 유형자산을 포함하며, 유형자산은 소유권, 자산의 실재성 및 진단대상사업에 대한 관련성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등기 또는 등록대상인 자산으로서 법적 및 실질적 소유권이 없는 경우에는 부실자산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또한 같은 지침 제21조에 따르면 **임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 금융자료, 확정일자, 임대인의 세무신고서 및 시가자료 등에 의하여 평가**하며, **거래의 실재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임차부동산이 본점, 지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 및 그 인접한 지역이 아닌 경우 또는 임직원용 주택인 경우 등은 부실자산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한 법인명의의 오피스텔의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취득증빙, 세금계산서, 등기부등본, 금융거래 등을 통한 실재성 및 진단대상사업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처리하며, **임차 건물의 소유자가 법인 대표자인 경우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자가 소유한 건물에 대한 보증금은 대여금, 가지급금 등 부실자산의 우려가 있으므로** 자산의 실재성, 진단대상사업과 관련성 등에 관하여 보증금 관련 계약서, 금융자료 및 자금출처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야 할 사항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등록관청에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같은 규정 제2장 라.에 따르면 건설업등록 기준의 사무실은 건설업영위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건설업자 등의 사무실과 명확히 구분되는 등 건설업 영위를 위해 필요한 책상 등 사무설비와 통신설비의 설치 및 사무인력이 상시 근무하기에 적합한 정도의 공간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건설경제과(044-201-3510)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2021.04.30

건설판례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다28825 판결

[매매대금][공2006.10.15.(260),1721]

판시사항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이루어지기 위한 요건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있어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의 대가(기성대가)가 조정 전에 이미 지급된 경우에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되어 계약금액조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있어, 계약체결일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함과 동시에 품목조정률이 일정한 비율 이상 증감함으로써 조정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계약금액조정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약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적법한 계약금액조정신청에 의하여 비로소 이루어진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있어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의 대가(기성대가)라 할지라도 그 대가가 조정에 앞서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증액조정이나 감액조정을 불문하고 그것이 개산급(개산급)으로 지급되었거나 계약당사자가 계약금액조정을 신청한 후에 지급된 것이라면 이는 차후 계약금액의 조정을 염두에 두고 일단 종전의 계약내용에 따라 잠정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물가변동적용대가(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에 포함되어 계약금액조정의 대상이 되나, 이와 달리 당사자 사이에 계약금액조정을 염두에 두지 않고 확정적으로 지급을 마친 기성대가는 당사자의 신뢰보호 견지에서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되어 계약금액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출처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다28825 판결 [매매대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수용 세무사의 '건설기업 세무회계'

이수용 세무사
코타 조세연구소 대표

<건설업 실태조사와 자본금>
요즘 건설업 실태조사로 인해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러 차례에 걸쳐 건설업 실태조사 자본금 등록기준과 관련한 내용과 준비방법에 대해 다뤄 보겠습니다.

01 건설업 실태조사의 근거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등록 당시는 물론 업을 영위하는 내내 상시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등록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는 건설사업자의 등록기준 상시 충족을 체크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과거에는 3년마다 등록기준을 신고하는 일명 '주기적신고'를 통해 이를 관리하고 점검했으나 과다한 행정력의 소모 등을 이유로 이를 폐지하고, 현재는 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를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사업자는 누구라도 이 내용을 확실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1항은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해 건설사업자로부터 그 업무, 재무관리 상태, 시공 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공사 시공에 필요한 자재 또는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02 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횟수

건산법 제49조 7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건설사업자의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구해야 한다'라고 정해 실태조사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입찰 사전단속을 위한 실태조사도 건산법에 근거한 것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03 검토의 범위

실태조사는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 등 건산법 의무 관련한 규정 모두에 대해 전반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를 다루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등록기준 자본금으로 범위를 한정해 설명하겠습니다.

04 건설사업자의 자본금 계산구조의 근거규정

건설업 자본금을 계산하는 구조와 절차는 건설업체기업진단지침 제3조와 제28조를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3조는 용어의 정의로, 계산구조 전반을 이해하는데 필요하며, 제28조는 특히 건설업 외의 업종을 겸업하는 겸업사업자의 자본금계산에 필요한 규정입니다.

05 일반적인 건설업 자본금 계산구조

아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매우 간단한 회계등식을 소개합니다. '자본금=자산-부채' 즉, 자본금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말하며 자산은 회사의 재산적가치가 있는 권리, 부채는 회사의 금전적인 부담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권리에서 의무를 뺀 것이므로 순수한 회사의 권리라고 표현할 수 있으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순자산가치라고도 표현합니다.

건설업 자본금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이 등식은 매우 유용하며 우리가 원하는 건설업 자본금은 건설업과 관련한 회사의 순자산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

1) 진단대상 실질자본(건설업 실질자본)의 계산
아래의 과정을 거쳐 계산되는 금액이 진단대상 실질자본이며, 이 금액은 신규등록, 실태조사 등에서 등록기준 최저 자본금과 비교대상이 되는 금액입니다.

☑ 따라서 계산된 금액이 여러분이 등록한 업종의 등록기준 자본금 이상이 돼야 적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진단지침 제3조의 7항 '진단대상사업 실질자산'이란 실질자산에서 겸업자산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 진단지침 제3조의 8항 '진단대상사업 실질부채'란 실질부채에서 겸업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 진단지침 제3조의 9항 '진단대상사업 실질자본'이란 진단대상사업의 실질자산에서 진단대상사업의 실질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서 진단대상이 되는 사업의 실질자본을 말한다.

진단대상사업이란 건설업을 말하므로 결국 여러분이 보유하고 있는 현재 상태의 건설업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산에서 건설업 실질부채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건설업 실질자산은 실질자산에서 겸업부채를 뺀 금액이며, 건설업 실질부채는 실질부채에서 겸업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건설업 실질자산과 그냥 실질자산은 의미가 다르며, 건설업 실질부채도 그냥 실질부채와 차이가 있습니다.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건설관련 법 상담
【강제타절에 따른 공사이행보증보험금 청구】

A사는 B사의 아파트 건축공사 중 철콘 및 건축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준공하던 중 현장소장이 바뀐 후 사소한 트집들을 잡아 강제타절을 하고 현장에서 철수하라고 하고 있어 현재 공사를 중단한 상태다. 그러다 난데없이 공사를 중단했다는 이유로 보증보험사에 공사이행보증보험금을 신청했다. 더욱이 A사는 B사로부터 공사대금지급보증서도 받지 않았고 실제로 일부 기성금은 받지 못하고 있는 처지다. 강제타절의 부당성과 대금지급보증서를 안 끊어 준 것을 문제삼아 보험사로 하여금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전문가 답변 : 보험사로서는 보증증권에 의해 보험금 청구가 들어온 이상 어쩔 수 없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보험증권상의 보험사고, 즉 공사중단이 발생했는지, 발생했다면 귀책사유는 누구에게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러한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고 일단 보험금을 지급하고 추후 보험사가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지급한 보험금을 보전받기 위한)구상금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절차에서 공사중단여부와 귀책사유에 대해 다투게 된다. 그러나 이름 그대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의 구상금소송인지라 소송진행이 기본적으로 보험사에 유리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보험금이 지급되게 되면 추후 보증증권 발급받기가 어려워지므로 신규 수주가 어려워지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일단은 무조건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원도급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소장접수증명원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보험증권은 대금지급보증과 공사이행보증별로 각각 발급되는 것이고 상호 연관관계가 없으므로 상대방이 대금지급보증을 안 해줬다는 이유로 공사이행보증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러한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기성금을 받지 못한 것도 민사상 대금지급에 관한 문제로 공사이행에 차질이 생겼느냐 하는 보험사고의 발생 관점과는 다른 것이어서 이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보류시킬 수도 없다.

참고로 이전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서만으로도 보험금 지급을 보류한 적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서만으로는 안되고 법원에서 소장을 접수시킨 접수증명원을 제출해야만 지급을 보류하고 있어 맞는 전략 선정이 필요하다. 감정적으로 우선 신고하거나 소를 제기하기보다 내가 가진 무기가 무엇인지 정확히 따져보는 게 가장 우선돼야 한다.

[출처] 대한전문건설신문 – 황보윤 법무법인 공정 대표변호사

부산 전문건설업체 등록현황

(2023. 12. 31. 기준)

지 역	업체수	등록수
중구	31	48
동구	70	117
서구	30	36
사하구	96	141
영도구	31	45
동래구	214	264
남구	130	169
금정구	285	402

지 역	업체수	등록수
연제구	165	249
해운대구	287	392
수영구	135	208
부산진구	179	241
북구	108	151
사상구	147	186
강서구	290	399
기장군	225	326
합계	2,423	3,374

부산 전출·입 전문건설업체 현황

(2023. 10. 1. ~ 2023. 12. 31.)

전출업체 현황
일성개발(주) (대표자 : 박문수, 경남)
(주)효민산업개발 (대표자 : 이종훈, 경남)
현광기업(주) (대표자 : 김희규, 경남)
(주)도경그린산업 (대표자 : 장용익, 경남)
(주)도원디엔씨 (대표자 : 박영수, 경북)
(주)제이앤케이디자인 (대표자 : 장청수, 전남)

전입업체 현황
(주)현우건설씨앤씨 (대표자 : 유병하, 경북)
도은토건(주) (대표자 : 한순이, 울산)
(주)픽즈인더스트리즈 (대표자 : 황지혜, 인천)
(주)해솔테크 (대표자 : 김애란, 세종)
(주)양화건설 (대표자 : 박종연, 경남)
(주)정보건설 (대표자 : 정태훈, 인천)

부산 전문건설업체 상호변경 현황

(2023. 10. 1. ~ 2023. 12. 31.)

변경전	변경후
(주)대한방수	(주)대한이앤씨
(주)새재건설	연풍건설(주)
(주)세오이엔지	(주)엘케이이앤씨
시우디자인	유승디자인
(주)엔에스나무병원	(주)엔에스포레
(주)이한디자인	(주)한스플랜
(주)제이디컨벤션	(주)제이디스
(주)현민건설산업	(주)이한디자인

부산 전문건설업체 대표자변경 현황

(2023. 10. 1. ~ 2023. 12. 31.)

상호명	변경전	변경후
강림건설(주)	이치형, 진미화	이치형
(주)경승기업	강석주	강석중(개명)
(주)구산조경	이경열	이대윤
(주)나로건설	전은희	이상목
대영건설산업개발(주)	이병수	이정애
(주)대원종합토건	김명원	우희라
동서에코소일(주)	김동욱	김동욱, 김태효
(주)디오건축	엄란현	전지혜
(주)랩904	김현우, 임태형	김현우
(주)바르비종	정지훈	허샘나, 정지훈
(주)삼미산업	김명숙	전봉주, 김광춘
(주)삼정엔지니어링	김성두	김기령
(주)선경기초개발	김대승	강선기
(주)신영티엔지	홍임식	정근우
(주)씨엠에스원	김수원, 박정은	김수원
(주)알지텍	김용덕, 윤은숙	윤은숙
(주)오션디자인	조신애	최송영
용하건설(주)	하병립	하원종
(주)우주이엔씨	정민주	정상기
(주)유건알미늄	전인주, 유인숙	유인숙
(주)영진종합토건	박기석	박인주
이에이바이오스(주)	김종기	김종기, 김보라
(주)이한디자인	이재경	한세라
(주)일우종합개발	엄혜경	이동준
주강건축(주)	이숙희	문윤수
(주)케이오씨	정소현, 윤태삼	윤태삼
케이티건설(주)	강상우	강상우, 김병곤
(주)한빛조경	박상철	유숙임
(주)한스플랜	한세라	최정윤
(주)한일씨엔에스	정옥자, 강기봉, 강미루	정옥자, 강기봉
(주)호연건설	손혜란	서주향
(주)화성	최수정	우정임
(주)힐텍	이동훈	최세원

부산시회 신규회원 현황

(2023. 10. 1. ~ 2023. 12. 31.)

박관지

(주)다온에스앤디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로 45, 301호
(동삼동, 세정빌딩)

T : 051-758-6720
보유업종: 실내건축공사업

허태호

(주)다온에스앤디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로 45, 301호
(동삼동, 세정빌딩)

T : 051-758-6720
보유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오미희

(주)단디엔지니어링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양운로 88, 102동 712호
(좌동, 해운대쌍용플래티넘 트윈)

T :
보유업종: 실내건축공사업

박순열

디자인마루건설(주)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신번영로 365, 145동(상가동) 102호
(하단동, 가락타운1번지)

T : 051-206-5222
보유업종: 실내건축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추창근

(주)보천건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반로 81-9, 201호 (재송동)

T : 051-558-1044
보유업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최병권

비케이건설(주)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신도시로 240, 201호
(금곡동)

T : 051-304-9991
보유업종: 실내건축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전현주

산하이앤씨(주)

부산광역시 금정구 남산로 37번길 36, 2층 (남산동)

T : 051-583-7077
보유업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박미란

(주)서은건설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로 120번가길 9, 2층 (대연동)

T : 051-626-0482
보유업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김종숙

(유)성진이앤씨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 8로 235, 604호 (명지동, 명지코아빌딩)

T : 051-207-5437
보유업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박세영

세원조경(주)

부산광역시 사하구 승학로 123-4, 11동 307호
(당리동, 당리신익아파트)

T : 051-293-1663
보유업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류현숙

새늘건설(주)

부산광역시 금정구 남산로 37번길 36, 2층

T : 051-515-1102
보유업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이용한

(주)수정하우징

부산광역시 동래구 아시아드대로231번길 52, 2층
(온천동)

T : 051-905-5450
보유업종: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김광곤

(주)순양

부산광역시 동래구 우장춘로 4번길 38 302호
(온천동 혜광빌딩)

T : 051-554-8445
보유업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안석곤

(주)숲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강로 709번길 16
(남산동)

T : 051-505-2391
보유업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정영훈

(주)영헌이엔씨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312, 721호(대연동, 센츄리시티오피스텔)

T : 051-610-0064
보유업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앤드유

이윤희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북로 188번길 9
(대저1동)

T : 1800-9713
보유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주)엠에이치건설

박혜연

부산광역시 동구 조방로26번길 11, 602호
(범일동, 동양오피스텔)

T : 051-647-8680
보유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유니드인테리어(주)

김성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백양대로 18번길 39, 2층
(부암동)

T : 010-3201-4399
보유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주)원주건설

심재민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 218번길 37
에이동 4-2호 (수안동)
T : 051-556-2024
보유업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이에이바이오스(주)

김종기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327번길 38 (서대신동3가)

T : 051-463-0231
보유업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이에이바이오스(주)

김보라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327번길 38 (서대신동3가)

T : 051-463-0231
보유업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정민건설

김태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550, 102동 1225호
(우동, 해운대한신휴플러스)
T : 051-743-1002
보유업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주안이엔씨(주)

문경복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사로 39, 2층
(안락동, 화목타운유치원동)
T : 051-532-3182
보유업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지금디자인

김강립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611번길 23, 1층 (광안동)

T : 051-621-1100
보유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주)태주이앤씨

이은지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680번길 32-5, 901호
(광안동, 한집시티빌)
T : 051-757-3867
보유업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태진에스앤디

황용운

부산광역시 연제구 좌수영로 306(연산동)

T : 051-506-6050
보유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주)펠리컨디자인

서동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신번영로 405, 301
(하단동)

T : 051-945-2700
보유업종: 실내건축공사업

화신기업(주)

김준오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178번길 40 (학장동)

T : 051-324-9700
보유업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해일비티에이

신소영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32, 2층(송정동)

T : 051-746-7904
보유업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KOSCA 중앙회 업무단신

▷ 중앙회 윤학수 회장, 시·도회 및 업종별협의회 회장은 12월 12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여 전문건설업계의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타워크레인 운영비용 전가 행위 개선 △특정 원사업자 건설현장 불공정행위 직권조사 요청 △특정 보증기관의 보증서 요구 개선 △공공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의무화 △하도급대금연동제 실효성 확보 △부당특약 효력 무효화 △유보금 설정 금지 방안 마련을 건의했으며, 이와 함께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제도 개선방안 마련, 건설기계사업자 위반행위 단속 등의 개선도 함께 요청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간담회 직후인 13일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 내년 직권조사를 통해 업계에서 건의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단속과 강력한 제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중앙회 윤학수 회장과 전문건설업계의 노력으로 그동안 전문건설업체들이 부당하게 떠안아 왔던 하자담보책임 기간과 책임소재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됐다. 하자 관련 갑질을 해소하기 위해 전건협이 관련 TF를 출범시키는 등 총력 대응해 온 입법활동 노력이 국회에서 최근 결실을 맺었기 때문이다.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구조내력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재료의 성질로 인해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수급인 등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법안의 통과는 윤학수 회장이 하자담보책임 개선을 공약으로 내걸고 국회와 긴밀하게 세일즈를 이어온 노력의 결실로 평가된다.

건산법 개정안에는 재료의 성질로 인해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수급인 등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했다.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성질로 인해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업체가 면책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와 함께 담보책임기간이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시작토록 명시됐고, 구조상 주요부분에 해당하는 구조내력(構造耐力)일 경우에만 10년으로 명시됐다. 그 외 구조물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엔 5년의 담보책임기간이 설정된다. 이외의 하자는 경미한 하자로 분류돼 같은법 시행령 별표4의 15호 전문공사의 하자기간에 따른다.

이로써 하자를 주요 구조부의 구조내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하자와 그렇지 않은 경미한 하자를 구분해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앞으로 업체들의 하자담보기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건설공제조합 업무단신

▷ 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이은재)은 11월 21일 글로벌 금융그룹 ING와 해외건설공사 보증업무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조합원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해외건설보증 확대를 위해 체결됐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ING은행에서도 해외 건설공사 수주 시 조합을 통해 해외 현지 금융기관의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프론팅 서비스'(조합이 ING은행 지점 및 현지 법인 앞으로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로 전문을 발송하면 해외건설공사 보증서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부산시회 2024. 1/4분기 주요일정

일 자	주요일정	비 고
2024.2.15.(목)	건설(전문)공사 실적신고 1차 접수 마감	
2024.2월 중	부산전문건설인 단합산행	
2024.2월 중	4대 사회보험 및 노동관계법령 강습회	
2024.3월 중	제1차 전문건설인 오찬세미나	
2024.4.15.(월)	건설(전문)공사 실적신고 2차(재무제표) 접수 마감	법인업체

※ 상기 일정은 협회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3- 건설안전실-624

일터안전에서 국민안심으로

동절기 건설현장 핵심안전수칙

동절기 사고유형별 핵심수칙

떨어짐

1. 단부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설치**
2. **작업발판,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3. **안전모** 착용, **안전대** 체결

무너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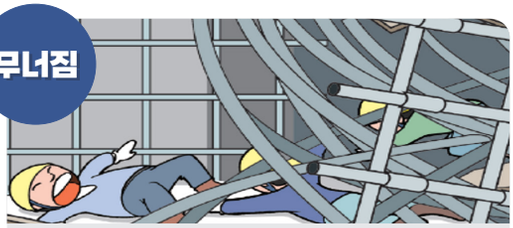

1. 흙막이 지보공, 거푸집 동바리 **변위** 확인
2. 굴착 경사면 **천막보양** 및 **배수로** 설치
3. 콘크리트 **혼화제·한중콘크리트** 사용

화재 폭발

1. **인화성 물질** 및 **가연물** 제거
2. 용접·용단작업 **불티비산방지덮개** 설치
3. **소화기** 설치 및 **화재감시자** 배치

중독 질식

1. 갈탄·숯탄 대신 **열풍기** 사용
2. **밀폐공간** 출입금지, 출입 전 **적정공기** 측정
3. 작업장 **환기, 송기마스크·공기호흡기** 착용

동절기 날씨 전망

기온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음

평년(0.1~0.9℃)과 비슷하거나 높을 수 있음
기온의 변화가 크고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겠음

강수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음

평년(71.2~102.9mm)과 비슷하거나 많을 수 있음
주로 맑고 건조하겠으나, 저기압의 영향으로 **많은 비 또는 눈이 내릴 수 있음**

건설현장 한파 대책

장시간 한파에 노출되면 **저체온증, 동상 등** 심각한 건강피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랭질환 예방수칙

따뜻한 옷 · 따뜻한 물 · 따뜻한 장소

긴급 시 119신고(후송)

고용노동부 ·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동절기 위험요인별 핵심점검사항

01 떨어짐 예방조치

핵심점검사항	확인자
1-1 추락위험 장소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추락방호망 설치	현장소장 ☐ 관리감독자 ☐
1-2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거나 추락방호망 설치가 어려울 경우 안전대 착용	현장소장 ☐ 관리감독자 ☐
1-3 공사 진행에 따른 개구부 및 단부 위치 확인 후 안전시설 조치	현장소장 ☐ 관리감독자 ☐
1-4 개구부 덮개를 임시로 연 경우 관리감독자 배치 및 작업종료 시 덮개 원상복구	현장소장 ☐ 관리감독자 ☐

02 무너짐 예방조치

핵심점검사항	확인자
2-1 거푸집 동바리 구조검토 후 조립도 작성·준수, 콘크리트 양생완료 전 해체 금지	현장소장 ☐ 관리감독자 ☐
2-2 콘크리트 타설 전 거푸집 동바리 변형·변위 점검, 타설 중 편심방지 분산 타설	현장소장 ☐ 관리감독자 ☐
2-3 흙막이 지보공 구조검토 후 조립도 작성·준수, 지보공 부식손상 확인 및 변위 계측	현장소장 ☐ 관리감독자 ☐
2-4 굴착사면 기울기 준수 및 주변 지반 부석·균열유무 등 점검	현장소장 ☐ 관리감독자 ☐

03 화재·폭발 예방조치

핵심점검사항	확인자
3-1 작업장 내 위험물, 가연물 파악 및 안전장소 보관 확인	현장소장 ☐ 관리감독자 ☐
3-2 화재위험작업 작업계획 수립, 화재 시 비상조치계획 수립 및 긴급대피훈련 실시	현장소장 ☐ 관리감독자 ☐
3-3 용접·용단 작업 장소 불티비산방지덮개·불꽃받이 비치	현장소장 ☐ 관리감독자 ☐
3-4 화재위험 구간 소화기 비치 및 화재감시자 배치	현장소장 ☐ 관리감독자 ☐

04 중독·질식 예방조치

핵심점검사항	확인자
4-1 콘크리트 보온 양생 시 갈탄·숯탄 대신 열풍기 사용	현장소장 ☐ 관리감독자 ☐
4-2 밀폐공간 입구 출입금지 표지 부착 및 작업자 무단출입 금지	현장소장 ☐ 관리감독자 ☐
4-3 밀폐공간 출입 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송기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	현장소장 ☐ 관리감독자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2024년 건설업 교육 일정안내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설교육센터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최고의 건설업 윤리 및 실무종합 교육기관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에 근거하여 건설업을 신규로 등록한 자(건설사업자가 추가로 다른 업종을 등록한 경우 제외) 및 영업정지기간 중인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건설업 윤리 및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건설업 신규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 미이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에 교육이수가 의무적이며, 영업정지기간 중인 건설업체의 경우는 동 교육 이수 시 영업정지기간이 최대 15일 감경될 수 있기에 교육이수가 권장된다.

2024년도 건설업 교육 일정 안내

01 교육대상

- **의무교육대상 : 신규건설 등록업체**
  - 6개월 이내 등기임원(대표자 포함) 중 1인 교육 이수
  - 벌칙: 6개월 이내 미이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 및 제99조
- **임의교육대상 : 영업정지 처분업체**
  - 영업정지 기간 내 교육 이수
  - 감경기준 : 대표자 15일, 등기임원 1인당 5일 감경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6

02 교육내용 및 비용

- **내용** : 건설산업관련법령(건산법·하도급법·계약법), 건설품질·환경·안전관리, 윤리경영
- **시간** : 8시간 (09:00~18:00)
- **교육비용** : 집합교육 150,000원 / 이러닝교육 135,000원

03 교육신청 및 결제방법

-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신청 및 교육비 결제 (신용카드, 계좌이체)**
  - 건설교육센터 http://edu.kosca.or.kr
    (팩스 02-3284-1066)
  - 입금계좌 : 기업은행 525-001144-04053
    (예금주 (사)대한전문건설협회)
- **문의** : 건설교육센터 ☎ 02-3284-1076, 1080

04 2024년 온라인(이러닝)교육 일정(~~2~4~~5~7월)

교육차수	신청 마감일	학습가능 기간		비 고
		부터	까지	
~~제6기~~	~~2. 8~~	~~2.10~~	~~2.16~~	
~~제7기~~	~~2.15~~	~~2.17~~	~~2.23~~	
~~제8기~~	~~2.29~~	~~3. 2~~	~~3. 8~~	
~~제9기~~	~~3. 7~~	~~3. 9~~	~~3.15~~	
~~제11기~~	~~3.21~~	~~3.23~~	~~3.29~~	
~~제12기~~	~~3.28~~	~~3.30~~	~~4. 5~~	
~~제14기~~	~~4.11~~	~~4.13~~	~~4.19~~	
~~제16기~~	~~4.25~~	~~4.27~~	~~5. 3~~	

05 2024년 집합교육 일정(~~2~4~~5~7월)

교육차수	교육일정	지역	장 소
~~제5기~~	~~02월 02일~~	~~서울~~	~~• 전문건설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 5길 15, 2층 중회의실)~~
~~제6기~~	~~02월 16일~~	~~대구~~	~~• 대구무역회관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89, 4층 대회의실)~~
~~제7기~~	~~02월 23일~~	~~전주~~	~~• 전주상공회의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7층 대회의실2)~~
~~제8기~~	~~03월 08일~~	~~서울~~	~~• 전문건설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 5길 15, 2층 중회의실)~~
~~제9기~~	~~03월 15일~~	~~부산~~	~~• 부산상공회의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 24, 2층 중회의실)~~
~~제10기~~	~~03월 22일~~	~~수원~~	~~• 수원상공회의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311, 5층 중회의실)~~
~~제11기~~	~~03월 29일~~	~~창원~~	~~• 대한직업자사경남지사 (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226, 3층 나눔홀)~~
~~제12기~~	~~04월 05일~~	~~천안~~	~~• 천안축구센터 (충남 천안시 서북구 축구센터로 150, 2층 중세미나실)~~
~~제13기~~	~~04월 12일~~	~~서울~~	~~• 전문건설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 5길 15, 2층 중회의실)~~
~~제14기~~	~~04월 19일~~	~~대구~~	~~• 대구무역회관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89, 4층 대회의실)~~
~~제15기~~	~~04월 26일~~	~~광주~~	~~• 광주상공회의소 (광주광역시 서구 대남대로 465, 지하 1강의실)~~

부산의 라라랜드
우암 도시숲

영도 바다와 부산항대교까지 한눈에 들어오는 우암동 도시숲, 이곳의 일몰과 야경 풍경이 아름다워 '부산의 라라랜드' 라는 별명이 붙여졌다.

규모는 작지만 한층 짙어진 초록의 숲이 싱그러운 공원을 만들어 준다. 공원 언덕에는 아름다운 보름달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곳이 인증사진 스폿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보름달 뒤로는 부산항대교와 봉래산이 보이고, 예쁜 인증사진과 함께 멋진 전망도 감상할 수 있다.

"북항대교의 야경이 한눈에"

높은 곳에 자리 잡은 우암동 도시숲은 부산항대교를 포함한 산복도로의 오색빛깔 야경과 함께 휘영청 떠 있는 보름달 포토존이 무척 낭만적인 곳이다. 촬영하는 각도에 따라 조금씩 다른 색과 모양을 보여주는 보름달은 우암동 도시숲의 상징이기도 하다. 연인, 가족, 친구와 함께, 또는 혼자라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보름달 인증샷을 찍을 수 있어 보름달에 비친 실루엣 사진, 나만의 감성을 담아 특별한 포즈로 연출해 낮과 밤이 다른 반전 매력을 느낄 수 있다.

우암 도시숲에서 멋진 밤, 반짝이는 도시의 야경을 배경으로 소중한 사람과 추억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사진 부산관광공사

디즈니가 사랑한
노이슈반슈타인성

노이슈반슈타인 성은 독일 바이에른 남서부에 위치해 있다.

이 성은 독일 남서부 바이에른주 퓌센 근처의 호헨슈반가우 마을 위 언덕에 있는데, 바이에른 왕국의 왕 루트비히 2세가 1869년부터 1892년까지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지은 성관이다.

성은 대칭적인 직사각형 계획으로 배치되어 있고, 3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층에는 작고 둥근 아치형 창문이 있다. 이 창문은 일렬로 설치되어 있는데 맨 아래 줄이 가장 크다.

그리고 수많은 포탑과 탑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대부분은 순전히 장식용이다. 넓은 중앙 안뜰도 있다.

노이슈반슈타인의 성은 캘리포니아 애너하임에 있는 디즈니랜드의 잠자는 숲속의 공주 성에서 영감을 얻었는데, 잠자는 숲속의 공주 성은 디즈니랜드에서 가장 상징적인 구조물 중 하나다. 이 성은 독일 바이에른에 있는 실제 노이슈반슈타인 성을 모티브로 한 것으로, 디즈니 파크에 최초로 지어진 성이다.

독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명소일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명소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 성은 뮌헨에서 차로 약 2시간 거리에 있는 슈반가우 마을에 있으며, 언덕에 위치해 있어 성에 가려면 언덕을 걸어 올라가야 한다. 성은 주차장에서 도보로 약 10분 거리에 있고, 일부 버스는 주차장에서 성까지 운행한다.

바이에른 여행에 동화 속 마법을 더하고 싶다면
노이슈반슈타인 성을 꼭 방문해 보기 바란다.

소통하는 문화공간

Healing Movie

잔잔한 여운과 따뜻한 감동을 남기는 영화는 메말랐던 감성을 풍부하게 만들며 생각을 환기시킨다.
잊고 있던 마음의 여유를 찾아줄 흥미롭고 감동적인 영화를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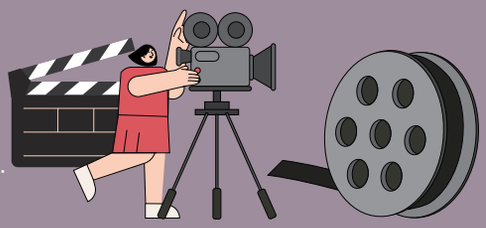

도그맨

개봉 2024.01.24. **감독** 릭 베송
출연 케일럽 랜드리 존스, 조조 T. 깁스, 크리스토퍼 데넘 외

"불행이 있는 곳마다, 신은 개를 보낸다"

릭 베송 감독의 영화 〈도그맨〉은 원작이 따로 없는, 릭 베송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다. 개들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한 남자의 쇼보다 더 파란만장한 삶을 그린 영화다. 2023 베니스영화제를 통해 8월 31일 최초 공개됐고, 9월 27일 프랑스에서 개봉한 이후 2023 부산국제영화제를 통해 국내에 공개됐다.
'도그맨'은 어릴적부터 아버지의 학대를 받았다. 개 사육농장에 갇혀지내면서 개들의 도움으로 사육장을 탈출하는데 이 과정에서 아버지가 쏜 총에 의해 부상을 입고 평생 휠체어를 타야하는 신세가 된다. 이런 과정을 겪으며 개에 대한 사랑이 커져가고 반대로 인간에 대한 불신은 심해진다. 힘든 상황에서도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는 도그맨.
뉴저지의 한 도심에서 핑크 드레스에 짙은 화장을 한 남자가 수백 마리의 개와 함께 긴급 체포된다.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던 그는 정신과 의사에게 15년간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한다. 신마저 외면했지만 개를 통해 구원받은 한 남자의 처절하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펼쳐진다.

나의 올드 오크

개봉 2024.01.17. **감독** 켄 로치
출연 데이브 터너, 에블라 마리 외

"중요한 건 무언가를 함께 한다는 거야"

영국의 북동쪽에 위치한 한 마을, 예전엔 광산의 광부들로 활기찼던 마을이었지만 폐광 이후로 떠나지 못한 일부 주민들만이 마을을 지키며 살고 있다. 빈집이 늘어남에 따라 마을의 집값은 떨어지기만 하고 주민들의 불만은 고조되어 가는 어느 날, 영국 정부에서 허가한 시리아 난민들이 마을로 집단 이주를 하게 된다. 가뜩이나 먹고살기 힘든 주민들과 시리아 난민들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은 묘한 긴장감이 흐르는 와중에, 한 시리아 여성과 마을에서 유일한 술집을 운영하는 한 남자의 우정이 싹트기 시작한다. 〈나의 올드 오크〉는 항상 자신의 작품을 통해 사회의 약자를 대변해 왔던 영국의 거장 켄 로치 감독의 26번째 장편이다. 그의 무수한 전작들처럼 이번 작품에서도 사회적 이슈를 다루지만, 그 가운데 힘겹게 솟아나는 인간애가 강조된다. 90세를 바라보는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신을 잃지 않는 켄 로치 감독의 열정은 그가 이 시대의 진정한 거장이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한다.

소통하는 문화공간

Healing Book

하루하루를 쳇바퀴처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잠시나마 쉬어갈 수 있는 영혼의 안식처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틈틈이 읽을 만한 분야별 힐링 북을 소개한다.

유목민의 투자의 정석

유목민 저 | 리더스북 | 2024년 01월 발행

직장인 개미들의 필독서, 가장 현실적인 주식투자 가이드로 손꼽히는 『나의 월급 독립 프로젝트』 『나의 투자는 새벽 4시에 시작된다』의 저자. 500만 원으로 시작해 7년 만에 거둔 누적 수익 300억 원에 대한 계좌 이력을 공개 인증해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개미의 전설' 유목민의 신작이 출간되었다.

일 잘하는사람은 논어에서 배운다

김은애 저 | 알에이치코리아(RHK) | 2024년 01월 발행

현업의 메커니즘과 스킬은 연마했지만 예기치 못한 상황은 매일 발생하게 되는 직장인. 그 상황에서 해답을 찾지 못하고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경쟁력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지 못한다. 반면 성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위기 상황이 오더라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을 만들어가며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낸다. 상황을 파악하고 사고하는 방식만 달라져도 나만의 경쟁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 매일 우리가 직면하는 수많은 업무 처리와 결정에 있어 보다 현명한 선택을 하는 방법이 고민이라면 《논어》는 그 답을 알고 있다. 수십 년을 인사 업무 총괄을 맡고 있는 저자는 《일 잘하는 사람은 논어에서 배운다》라는 책으로 시대를 뛰어넘는 공자의 가르침을 통해 현시대 직장인들의 고민점을 코칭해주고 있다.

별의 길

양세형 저 | 이야기장수 | 2023년 12월 발행

코미디언 양세형의 첫 시집 『별의 길』(이야기장수)이 출간되었다. 언뜻 의외의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 사람들을 웃겨주는 이 코미디언과 시의 만남은 꽤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 어렸을 때부터 단어들을 조립하여 감정을 표현하는 '행복한 놀이'를 즐겼다는 그는 후배 개그맨들의 결혼식에서 직접 쓴 감동적인 축시를 낭독해 유튜브 100만 조회 수를 기록하고, 예능 프로그램 [집사부일체]에서는 이 시집의 표제시가 된 「별의 길」을 즉석에서 쓰고 낭독해 패널들의 찬사를 듣기도 했다. 그는 여태까지 단 한 권의 시집도 내지 않았으나, 온라인상에서는 그의 시 「별의 길」을 필사하거나 노래로 만들어 부르는 사람까지 나타났고, 그는 시집 없는 시인으로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조용히 시를 선물해왔다.

분초사회

시간은 돈보다 소중하다!

'2024 트렌드 코리아'가 발표한 올해 대표 키워드로 '분초사회'가 꼽혔다.

분초사회란 시간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분초(分秒)를 다투며 산다는 의미다. 소비 트렌드 전문가인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요즘 사람들이 극도로 '시간의 가성비'를 중요시한다고 말하며 앞으로 돈만큼 시간이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초사회는 시성비(시간의 가성비)로 정리된다. 이제 사람들이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분 단위로 약속을 정하고, 배속 시청이 아니면 콘텐츠 소비를 꺼리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LG유플러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무려 39%의 소비자가 1.5배속, 20%는 2배속으로 콘텐츠를 감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젊은 소비자가 영화관에 가지 않는 이유와 휴가를 반의 반차까지 쪼개 쓰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코로나19로 재택근무와 유연근무 등을 경험하면서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고, 개인의 생활패턴이나 소비형태도 변화했다. 이제 젊은 세대는 출퇴근 시간을 아끼기 위해 직장과 집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퇴근후 밀린 집안일을 처리하다 보면 본인만의 시간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가사노동에 소요되는 시간을 아껴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실용적인 가전의 인기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물가 상승과 시간 절약 등을 이유로 직장인들이 사무실 내에서 식사를 해결하는 일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정해진 식단을 배송해주는 식사 구독서비스도 인기를 끌고 있다.

2025년 세계 환경의 날

2025년 세계 환경의 날 우리나라에서 개최

– 1997년 서울 개최 이후 28년 만에 개최

세계 환경의 날(매년 6월 5일)은 환경 보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노력을 다짐하기 위해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제정된 국제연합기념일로, 각국 주요 인사들, 국제기구 대표, 기업 및 전 세계 시민단체 대표들이 참석하여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을 다짐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환경 행사다. 우리나라는 1997년 6월 5일 서울에서 제28차 세계 환경의 날 기념식을 치룬 이래 28년 만에 국제적인 환경 행사를 다시 유치하게 되었다.

특히 2025년 환경의 날 행사는 2024년 하반기 국내 유치가 확정된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 협상 이후 이듬해 개최되는 만큼, 플라스틱 오염종식의 중요성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국내개최 장소 등 세부적인 행사 내용은 향후 유엔환경계획 측과 협의를 통해 2024년 중 결정될 예정이다.

• 연도별 개최국·주제

연도	개최국	주제
2025	한국	향후 UNEP과 구체적 협의 예정
2024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미정
2023	코트디부아르	플라스틱 오염 해법
2022	스웨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적인 삶
2021	파키스탄	생태계 복원
2020	콜롬비아	생물다양성
2019	중국	대기오염
2018	인도	플라스틱 오염 종식
2017	캐나다	자연–인간 연결
2016	앙골라	야생동물 불법교역
2015	이탈리아	자원효율 및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2014	바베이도스	도서개발도상국과 기후변화
2013	몽골	환경을 위한 식생활

• 협상 일정 – '24년 하반기까지 총 5차례의 정부간협상위원회 개최 예정

INC*–1	INC–2	INC–3	INC–4	INC–5
'22. 11월(우루과이)	'23. 5월(프랑스)	'23. 11월(케냐)	'24. 5월(캐나다)	'24. 하반기(대한민국)

* INC : 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정부간협상위원회)

출처 환경부

동백패스 (대중교통 통합할인제)

전국 최초 대중교통 통합할인제 「동백패스」

▶ 동백전이란?

일상에서 함께하는 부산 필수템 "동백전"
부산지역화폐, 동백전에 대해 알아볼까요?

부산시의 상징화인 '동백꽃'과 화폐를 의미하는 '전(錢)'을 합성해 만든 부산지역화폐의 명칭입니다.
소상공인과 시민, 전통시장이 함께(동.同) 상생하고 협력하며 소비의 선순환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100(백)가지 행복과 즐거움을 준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 동백패스란?

동백전 후불교통카드로 부산 대중교통수단 이용시 사용한 그 다음달에 동백전(정책지원금)으로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환급해 주는 서비스
예) 9월 1일 ~ 9월 30일 사용분, 10월 10일 환급

▶ 혜택

동백전 후불교통카드를 이용하여 부산 대중교통을 월 4만 5천원 초과하여 사용(결제)시 최대 4만 5천원까지 동백전으로 환급

▶ 대상

동백전 후불교통카드를 이용하여 부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 누구나
※ 2G 폰 또는 본인 명의 스마트폰이 아닌 경우 부산은행 영업점 방문 필요

▶ 적용 교통수단

부산 시내버스·마을버스, 도시철도, 경전철, 동해선
※ 2000번 버스 제외

동백전 후불교통카드 발급 : 부산은행, 하나카드, 농협은행

▶ 주의사항

동백전 앱에서 동백패스 가입 필수
실물 카드 사용 필수
※ 삼성페이 등 모바일 결제시 실적 미인정
카드 변경시 익월 사용분부터 환급 적용

▶ 예시

- 동백전(후불교통카드) 발급 + 동백패스 가입 + 대중교통 8만원 사용 = 익월 3만 5천원 환급
- 동백전(후불교통카드) 발급 + 동백패스 미가입 + 대중교통 8만원 사용 = 익월 환급금 미지급

출처 부산시지역화폐 동백전 홈페이지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어요!

정신질환을 예방하려면 일상에서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한다.
스트레스를 적절히 관리하고 잘 먹고 잘 쉬는 것도 필요하다. 당연하고 기본적인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

01

충분히 잘 자기

수면은 우리 몸의 '배터리'를 충전하는 시간이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노동시간은 상위권이면서 수면시간은 8시간 이하로 일본과 함께 최하위를 선점하고 있다. 수면은 정신건강과 밀접해 둘은 상호 영향을 미친다. 정신건강이 악화되면 수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정신건강에 악영향이 생긴다는 뜻이다.
불면증 환자 중 40%가 우울증을 겪고, 우울증 환자 약 80%는 불면증 증상을 겪는다고 알려졌다. 따라서 잘 자야 한다. 규칙적인 활동 시간과 수면시간을 정해 하루의 생활 패턴을 유지하자.

02

스트레스 관리하기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되면서 면역력이 저하된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스트레스는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우울증이나 조울증의 원인으로 꼽히기도 한다. 명상이나 건강한 취미생활 등 나만의 탈출구를 찾아 스트레스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로 정기적으로 명상을 하면 마음속 불안이나 우울 등을 잠재우게 되면서 스트레스 수치가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

03

함께 시간 보내기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고 가까운 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친구 또는 가족과 함께 등산하기, 여행하기 등 취미 생활이나 즐거운 활동을 하자. 굳이 대화를 하지 않더라도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 그 자체가 우울증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04

규칙적으로 운동하기

운동은 뇌의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염증을 줄이며 신체면역반응을 높여 우울증 예방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운동이 우울증을 예방한다는 이 사실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캠브리지대학 연구팀은 총 19만 1천 명을 대상으로 한 15개 연구 결과를 분석했다. 매일 30분 이상 가볍게 숨이 차지만 짧은 대화는 가능한 강도로 걷자. 적어도 주 3회 이상, 30~40분 동안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여기에 주 2회 정도의 근력운동을 병행하면 더욱 도움이 된다.

05

균형 잡힌 식사하기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칼로리로 구성된 균형 잡힌 식사를 규칙적으로 해야 한다. 과식이나 붉은 고기,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식품의 섭취를 줄이고 식이 섬유 섭취는 늘리며 지중해식 식단을 유지해보자. 과일, 채소, 통곡물, 올리브유, 견과류, 콩, 허브와 향신료 등은 끼니마다 섭취하는 것이 좋다. 생선과 해산물은 1주일에 2회 이상 섭취하고, 닭고기와 같은 흰살 고기와 달걀, 치즈, 요거트 등은 매주 적당량을 섭취하자.

출처 대한의학회, 질병관리청

면역력에 좋은 귤

귤 효능

1. 비타민C
비타민C가 풍부한 귤은 면역 체계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콜라겐 형성을 촉진하여 피부의 탄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항산화 성분
베타 카로티노이드, 플라보노이드와 같은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귤은 자유라디칼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3. 소화 지원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는 귤은 소화를 촉진하고, 장 건강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4. 심혈관 건강
칼륨 함량이 높아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며 심혈관 건강을 촉진합니다.

5. 스트레스 해소
귤 성분 중 중추신경을 자극해 스트레스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6. 다이어트
포만감은 높지만 칼로리는 낮아 식사량 제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7. 심신 안정
귤의 상큼한 향기는 테르펜 때문입니다. 귤의 테르펜은 몸의 활성을 높여주어 혈액순환을 도와, 심신 안정 효과가 있습니다.

8. 식욕증진
귤의 신맛의 원인인 구연산이 식욕 증진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9. 빈혈 예방
비타민C가 철분 흡수를 높여주는데 도움을 주어 빈혈 예방에 기여합니다.

10. 뼈 건강
칼슘과 마그네슘을 함유하고 있어 뼈 건강을 유지하고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코스카레터를 읽고...

1. 세도건설(주) **송미화** 과장

– 각종 행사 등 흥미로운 것도 있지만, 법령개정 등 업무에 직접적으로 연관있는 부분이 있어서 실수로 놓치거나 한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 해 볼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실무에 반영되는 부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점이 가장 좋았으며, 건설판례등 쉽게 접하기 어려운 부분 또한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책과 가볼만한곳 추천을 통해 리프레시할 수 있는 정보도 알게되어 좋았고, 앞으로도 좋은소식 많이 부탁드립니다 :)

2. (주)통영산업건설 **박승훈** 부장

– 전문건설협회의 동향, 소식 등을 알 수 있어 좋았고, 부산의 명소 소개 등 다양한 읽을 거리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소식 부탁합니다.

코스카레터 잘 읽으셨나요?

Quiz를 풀고 정답을 맞혀주세요~

코스카레터 잘 읽으셨나요? Quiz를 풀고 정답을 맞춰주세요 ~

Q 종합과 전문의 상호시장 개방에 따른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최근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시행일자 : 2024. 1. 1부터)에서는 소규모 전문공사에 대해서는 종합건설사업자의 원도급 수주를 한시적으로 제한하도록 하고, 2개 이상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공동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문공사 컨소시엄 제도의 시행일을 3년 유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얼마 미만의 전문공사를 소규모 전문공사로 보아 전문건설 보호구간(3년간)으로 설정해 두었을까요?

지난호 독자퀴즈 정답

(지난호 퀴즈 정답 : 반기 1회 이상)

지난호 독자퀴즈 정답자 발표

1. 산하이앤씨(주) 대표이사 전현주
2. (주)수정하우징 대표이사 이용한

정답을 아시는 분은 협회 **홈페이지(www.kosca21.or.kr)** 팝업창을 통해 **응모(기간 : 2024.2.29(목)까지)** 하시면 추첨하여(정답자에 한함)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코스카톡 중앙회장에게 바란다

Ⅰ 코스카톡 앱 설치 방법

01. 안드로이드(삼성폰 등)

01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코스카톡" 검색 후 설치

또는

02 QR코드 스캔후 코스카톡 설치

02. ios(아이폰 등)

01 앱스토어에서 "코스카톡" 검색 후 설치

또는

02 QR코드 스캔후 코스카톡 설치

03.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

인터넷 주소창에 https://sinmungo.kosca.or.kr 입력 후 접속

Ⅱ 코스카톡 앱 회원가입 방법

회원가입 절차 : **회원가입하기** 클릭 후 **개인정보 입력**(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휴대전화 번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회원조회** 클릭 ⇒ **비밀번호 2회 등록**(영문, 숫자, 특수문자 포함 8자리 입력) ⇒ **가입완료**

※ **ID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자동 부여**되며, 회원사당 1개 ID만 가입 가능

※ **회원사 소속 임·직원은 ID(사업자번호)·비밀번호를 사용하여 타기기 (동시접속 가능)**에서 로그인 후 사용 가능

KOSCA
대한전문건설협회
부 산 광 역 시 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30번길 30, 4층(범천동, 전문건설회관)
Tel. 051-633-0260 Fax. 051-633-0261
www.Kosca21.or.kr